

■ 판례 동향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석탄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시기

■ 품목분류 동향

진공펌프의 품목분류
기준

■ 개정법령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

‘인권·환경 경영’, 기업 윤리 넘어 국제통상 이슈로 부각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주 배송료 부담 없이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고, CUSTRA 홈페이지(www.custra.com)를 통해서 주요 기사 및 법령 개정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60,000원(월 30,000원)
년 48회 발행
- 정기구독 신청 방법
 - CUSTRA 홈페이지 : www.custra.com
 -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 이메일 : know@kctdi.or.kr
 - 전화 : 02-3416-5112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96-01-0015-7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인 이찬기

편집인 이소영

총괄 권송미 vksm73@kctdi.or.kr

편집기획 이상혁 knight1229@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하세은 hse121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디자인 이승훈 lsh0910@kctdi.or.kr

마케팅 함동규 hdk0929@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4년 6월 3일(통권 제2085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가격 7,500원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인권·환경 경영', 기업 윤리 넘어 국제통상 이슈로 부각

06 Weekly News**15 전문가 칼럼**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장

관세행정실무해설**19 관세행정안내**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증명서 제8번란 작성방법

24 질의응답사례

캠핑용 버너 스토브의 품목분류

관례동향**26 관세판례해설**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석탄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시기

품목분류동향**47 품목분류해설**

진공펌프의 품목분류 기준

69 품목분류 M.A.P

'웨하스'로 알려진 웨이퍼 분류 사례

72 세번 바로잡기

베드 린넨

73 상식 밖의 상품학

'안티에이징' 화장품 판매 제한

최신개정법령**76 훈령**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77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

78 공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인권·환경 경영’, 기업 윤리 넘어 국제통상 이슈로 부각

‘EU 공급망 실사지침’ 최종 승인 … 글로벌 기업 비상

기업에 인권·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 EU 이사회를 통과하며 국내 기업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EU 이사회는 5월 24일 본회의를 열고 CSDDD를 최종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EU 역내 CSDDD 적용 대상 기업은 약 5,400개로 추정되며 이는 2022년 2월 발의된 초안 대비 약 67% 감소한 수치다.

■ CSDDD로 인권·환경 중요성 부각

무역협회에 따르면, CSDDD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자사, 자회사 공급망 내 환경 파괴 및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가 있는지 그 영향을 의무적으로 실사하는 게 골자다. 즉, 기업의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EU 회원국은 CSDDD 공식 발효 후 이를 가이드라인 삼아 2년 내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며, 하나 이상의 감독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적용 대상 기업은 경영 전반에 걸쳐 실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 영향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예방 및 완화 조치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관련 단체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실사업무 이행 내용을 최소 12개월마다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채택해야 한다. 다만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적용기업은 공급망실사정보 공시 및 기후변화 대응 전환계획 수립 의무가 면제된다. 규정 위반 시 전 세계 연 매출액 최소 5%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높아지는 EU發 무역장벽 … 국내 대기업 상당수도 적용 대상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관련 실사 의무는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 기업의 경우 직원수 기준 없이 EU 내 매출액이 4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면 적용 대상이다. 한화 약 6,6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국 국내 상당수 대기업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되는 국내 중소기업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EU 공급망실사지침 적용 시점 ●

구분		2027년(3년 후)	2028년(4년 후)	2029년(5년 후)
역내	근로자수	5,000명 초과	3,000명 초과	1,000명 초과
	전 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9억 유로 초과	4억 5,000만 유로 초과
역외	전 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9억 유로 초과	4억 5,000만 유로 초과

* 로열티 수익 기준 적용 대상 기업은 2029년부터 일괄 적용(출처 : 한국무역협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권·환경과 관련한 실사지침에 대비가 돼 있지 않은 기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다. 세계벤치마킹연합(WBA) 협력기관 비정부기구 휴먼아시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기업 12개社(민간 기업 10곳, 공기업 2곳)를 대상으로 인권 실사 수준을 평가한 바에 따르면, 다수 기업이 인권 경영 체계 구축과 정책 마련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기업 12개社 중 8개社는 지표 달성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인권 존중 내재화와 인권 실사’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인권 실사 준비가 더욱 미비할 가능성이 크다.

■ 경영 부담 가중 vs 인권·환경침해 리스크 높은 국가 대비 우위

EU가 탄소배출량을 규제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이어 또 하나의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10월 시행된 EU CBAM으로 국내 기업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CSDDD가 발효되면 경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수출기업 205개社를 대상으로 조사해 올해 3월 발표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부담이 되는 ESG 수출규제로 CBAM(48.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CSDDD(23.9%), ▲포장재법(12.2%), ▲CSRD 및 공시기준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대부분 공급망 실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81.4%가 ‘공급망 실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시행하고 있다’ 또는 ‘시행할 계획이다’라는 응답은 각각 9.3%였다.

특히 해외에 소재한 협력업체에 대한 공급망 실사 대응 수준에 관한 질문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7.9%를 차지해 해외 협력업체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의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U를 중심으로 한 ESG 수출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생산성본부 오범택 ESG컨설팅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5월 9일 진행한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에 참석해 “기업 내부에 일원화된 ESG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급망실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독일의 현지 법무법인 테일러 베싱의 루이 반킹 변호사는 공급망 실사법을 입법한 독일의 사례를 공유하며 “EU의 CSDDD 도입이 오히려 한국 기업에는 유럽시장 진출 시 인권·환경침해 리스크가 높은 국가 대비 우위를 점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김상민 변호사는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3월 20일 열린 ‘대한민국 ESG클럽 월례포럼’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신뢰를 높이려면 공급망 실사의 의무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실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CBAM에 CSDDD까지 ‘인권·환경장벽’을 공고히하고 있어 우리 산업계 또한 전 세계 흐름에 동참하며 신속하고도 정밀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 김성은 기자 |

우리 수출시장 뜨겁게 달굴 아랍에미리트發 훈풍 부나

5월 29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정식 서명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체결됐다.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무기류를 시작으로 압연기·금속 주조기, 자동차 및 부품과 가전제품 등 다양한 수출 유망 품목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新중동 지역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9일 안덕근 산업부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협상이 타결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앞으로 양국은 한·UAE CEPA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고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정식 발효된다.

UAE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수출 28위, 수입 9위)으로 교역규모는 2020년 94억 달러에서 작년 209억 달러로 급성장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알루미늄, 동 제품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 및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또한 UAE는 중동지역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서 이 지역 내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상품 시장 개방으로 시장 선점 효과

협정이 발효되면 가장 먼저 우리 新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 대부분 품목이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과 가전제품 등 품목들도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되며, 화물차·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가 확보돼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 외 의류기기, 의약품, 화장품, LED 조명기기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인삼류, 조미김·멸치·전복 등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원유 수입관세 철폐로 물가 안정 기여할 듯

이번 협정으로 원유 수입관세가 철폐돼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UAE產 원유의

수입관세를 기존 3%에서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석유화학제품의 주요 원료인 나프타 수입관세는 기존 0.5%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절반인 0.25%로 감축된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시장도 개방돼 우리 기업 진출기회 확대는 물론 K-콘텐츠 확산도 기대

UAE는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최초로 개방해 중동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한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UAE의 월 평균 한국 게임 지출액은 68.98달러로 중동지역 평균 38.51달러 보다 높았으며, 중동지역의 게임 이용시간은 주중 159분, 주말 218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의료기관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된다.

다양한 협력 분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 위한 근거 마련

한편 이번 한·UAE CEPA에서 新통상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경제협력 체계도 마련했다.

14개 협력 분야는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분야다.

특히 UAE가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新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무역 규범 개선으로 기업 활동 편의 제공

이어 이번 협정을 통해 통관,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지재산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규범도 개선했다.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WTO 정부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서 UAE측은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 및 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 하구현 기자 |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서 '요건면제확인서 제출' 제외

「관세법 제26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세관장확인대상 생략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에서 요건면제확인서 제출을 제외한다.

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법령 등 변경사항을 현행화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행정예고하고, 6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은 그동안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이 명확해졌고, 통합공고 등 유사제도와와의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이 명확해졌다. 수출입자가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일종의 세관장확인절차로서, 요건면제확인서 제출을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기존 수출입자가 세관에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은 세관장이 요건 면제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는데, 요건면제확인서 제출이 마치 세관장확인이 생략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이어 통합공고에 규정된 요건 확인 면제 예외 법령 중 세관장확인 고시에 누락된 「방위사업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일부 법령을 반영해 통합공고와 세관장확인대상 법령의 통일성을 강화한다.

또한 요건 대상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요건확인기관이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요청 시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요청 품목 수 10개 이하)을 삭제한다.

이와 함께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요청 시 해당 물품의 소관법령이 통합공고에 미리 반영될 것 등 지정 절차상 요건 확인기관의 준수사항을 신설한다.

아울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 전 「문화재 보호법」) 등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요건확인기관의 명칭 변경,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관련 서식 변경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야생동물(파충류) 수입검역 요건을 신설해 반영한다.

더불어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 요청·협의사항 반영 등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와 이메일(kkbses@korea.kr) 또는 팩스(042-481-7829)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와 (042-481-7841, 7895)로 문의하면 된다.

| 하세은 기자 |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 통관 강화 대응

안전성 관리로 포도 수출 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

우리나라 포도 최대 수출국인 대만이 최근 통관 단계 안전성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응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를 5월 23일부터 시행해 지금의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겠다고 5월 28일 밝혔다.

대만은 우리나라 포도 수출의 23.9%를 차지하는 1위 수출국이다. 최근 3년간 대만에 대한 포도 수출이 급증했는데, 작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393% 증가한 1,070만 달러였다.

사전등록제는 수출업체와 농가에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해 생산단계부터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부터 포도 수출 농가와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와 농가는 농촌진흥청 주관의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의무 이수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신고해 ID를 받아야 한다.

●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 관련 ID 이용 제재 ●

위반횟수	제재 내용	비고
1회	ID 삭제, 1년간 등록제한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가에 동일하게 적용
2회	ID 삭제, 2년간 등록제한	
3회 이상	ID 삭제, 3년간 등록제한	

●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 관련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사업 제재 ●

위반횟수	제재 내용	비고
1회	차년도 배정액 산출 시 최근 1년간 대만 포도수출 실적 제외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가에 동일하게 적용
2회	차년도 배정액 산출 시 최근 2년간 대만 포도수출 실적 제외	
3회 이상	차년도 배정액 산출 시 최근 3년간 대만 포도수출 실적 제외	

* 수출국 통관 중 검역에 불합격했으나 자진 신고한 경우, ID 이용 제재 기간 및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사업 제외 실적의 1/2 감감

수출 15일 전 농가의 잔류농약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잔류농약검사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해 검역증을 발급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국내 또는 수출국 통관 과정에서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수출업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위반 내역을 보고하고 원인 분석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 김성은 기자 |

인니, 화장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 5개 품목에 PI 요건 삭제

인니, 수입제한 관련 3차 개정안 발표 … 일부 품목 수입규제 완화

인도네시아정부가 일부 품목에 대한 사전수입승인(PI) 요건 삭제와 대부분의 품목에 더이상 기술적 고려사항(Pertek, Pertimbangan Teknis)을 취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 완화 등을 담은 2024년 무역부 규정 제8호(3차 개정안)을 발표했다.

3차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및 가정용품, 가방, 밸브, 윤활제 원료 등 5개 품목은 사전수입승인(PI)을 더이상 받지 않아도 되며, 선적 전 검사(LS)만 받으면 된다. 단 밸브와 윤활제 원료에 대한 신규 수입 규정은 올해 6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전자제품, 신발,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장난감 등 4개 품목은 PI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Pertek 발급은 면제된다. 이는 기업이 Pertek 없이 수입쿼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전자제품, 신발,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내에서도 HS Code 기준으로 PI를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이 있어 이는 인도네시아 무역부 발표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API-P 보유자가 보완재(Complementary Goods, Barang Komplementer), 시장 테스트 및 애프터서비스 목적으로 수입하는 18개 품목은 산업부 Pertek 발급이 면제된다. 인도네시아 수입 라이선스의 종류 중 하나인 API-P는 재화, 원재료 및 기계장치·설비 등을 수입해 생산 활동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체에 부여되는 라이선스이며, API-U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회사에 부여되는 수입 라이선스로 유통업체들이 획득한다. 또한 규정에서 말하는 보완재는 API-P 보유자가 해외나 계열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생산할 만큼 수요가 없거나 현지에서 생산이 불가능해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제품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Pertek 발급 면제 품목 중에서 가공 동물성 제품(Processed animal product)은 기존 산업부와 농림부로부터 Pertek을 취득해야 했다는 점으로, 이번 변경을 통해 산업부 Pertek 발급은 면제가 됐지만 농림부로부터는 Pertek을 취득해야 한다.

KOTR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정부는 3차 개정안에서 통관이 지연 중인 물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10일부터 5월 17일 사이에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으나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수입 제품(철강 및 섬유 제품 제외)은 3차 개정안 수입 요건이 소급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타이어 수입을 위해서는 여전히 산업부로부터 Pertek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절차는 2024년 산업부 규정 제10호에 명시하고 있다.

KOTRA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일부 품목의 수입제한이 완화돼 우리 기업의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수입제한 규정이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 산업 고도화를 위해 시행된 만큼 추후 재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하세은 기자 |

식약처,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대상을 5월 30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품목허가 변경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약품 국내 공급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작년 12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식약처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품목 변경허가 처리 전 업체의 제조·수입 일정을 고려해 변경허가일을 사전 협의하고 신청업체의 희망일에 맞춰 변경 허가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신약, 희귀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까지 확대된다. 올해 12월 말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한 후 평가·검토를 거쳐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등을 말한다. 2023년 기준 약 2,805개 품목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에 해당됐다.

'제15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개최 ... 면류 수출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면 등 K-푸드의 중국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5월 30일 중국정부와 '제15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식품 기준 분야에서 韓·中 양국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국산 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는 두 나라 식품 기준·규격 운영 기관인 '한국 식약처 식품 기준기획관'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 간 양해각서체결에 따른 것으로 정기 회의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2009년부터 중국으로 국내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업체들이 겪는 식품 기준·규격 분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매년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韓·中 양국은 ▲주요 기준·규격 제·개정 동향,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물리적 재생원료(PET) 인정 절차 및 관리현황 등 식품 기준 관리 현황, ▲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 관리방안, ▲업계 수출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식약처는 K-라면의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라면 업계 애로사항인 중국 면류의 수분함량 및 미생물 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 KATI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한국産 라면의 중국 수출액은 2018년 9,300만 달러, 2020년 1억 4,900만 달러, 2022년 1억 8,900만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중국의 식품기준 개선을 추진했고 그 결과 김치, 냉동삼계탕 등의 對中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등 K-푸드의 수출 활로를 넓히는 데 다수의 성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 김성은 기자 |

K-SURE·중진공, 수출 中企 금융애로 완화 위해 맞손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난을 겪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5월 28일 체결했다.

해외진출 기업의 저리 용자와 보증 우대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양 기관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수출기업에 이차(利差)보전 자금 지원·수출 보험·컨설팅 등을 공동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SURE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진공이 최대 3%p까지 이차보전하는 新시장진출 지원자금 지원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우대 보증하고, 운전자금 및 수출채권 매입 시 보증 우대와 수출보험·신용조사·수출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중진공은 K-SURE가 선정한 수출기업에 중진공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하기로 했다.

K-SURE는 “중진공과의 이번 협약으로 글로벌 3高 현상(高금리·高환율·高물가)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역량을 제고하는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부, 6월 중 중소기업 전용 선박 추가 지원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희망봉 우회 지속, 글로벌 물동량 증가 등으로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중소기업 전용 선박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홍해지역 물류난에 대응하고자 시행해오고 있는 수출기업 물류지원 컨틴전시 플랜 2단계 조치의 일환이다.

중소기업 전용 선박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는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등을 통해 미주, 북유럽, 지중해 등 주요 노선별 선박 수요와 더불어 신규로 지원이 필요한 추가 노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선박 수요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추가 전용 선박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월 무역협회와 국적선사인 HMM 등과 협업해 중소기업 전용 선박 공간을 사전에 확보해 주당 약 156TEU 규모의 전용 선박을 제공한 바 있다.

아울러 사업부는 해운·항공 운임 및 보험료 등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사업이 6월 중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모집공고·평가 등의 지원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향후 해상운임이 과도한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3단계 비상대응 조치로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물류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 단계별 대응 매뉴얼 ●

- 1단계(현 시행중, ~2,700p) : 수출바우처 內 물류비 한도 긴급 확대(2,000→3,000만원), 해외 공동물류센터 긴급 지원(36억원), 중소 전용 선박 제공,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등
- 2단계(추가조치, ~3,900p) : 하반기 수출 바우처(31억원) 조기 투입, 중소 전용 선박 추가 지원 등
- 3단계(비상대응, 3,900p이상)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수출지원 위한 재생원료 사용 인증 체제 본격화

1차 시범사업 체계안 개발로 6월부터 2차 시범사업 착수

우리 기업들이 제품 수출을 위해 과도하게 지불하는 해외 재생원료 인증 비용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한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이 완료돼 6월부터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인증 체계안이 개발됨에 따라 6월부터는 2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원료부터 소재, 부품 및 최종재에 이르는 제품 공급망의 쏠 과정을 추적해 재생원료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인증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수출 시 해외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을 받아야 하고,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부가 추진한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은 전자제품(냉장고, TV, 사운드바, 슈케어) 및 전기차 배터리(원료) 등 5개 제품군(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인증 체계안을 개발했으며, 6월 중 시작될 2차 시범사업에서는 섬유(의류·소재), 배터리(공급망),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개발된 인증체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ce@kncpc.re.kr)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해외 인증제도와와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제품 수출 시 과도한 해외 인증 비용 등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 재생원료 인증제도 구성 ●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밀착 지원 … 제2회 정부 합동 설명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설명회가 5월 30일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4월 부산·경남권에서 열린 제1회 정부 합동 설명회에 이어 수도권에 소재한 우리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응 우수기업에서 실제 제도를 이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준비사항 등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돼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대를 모았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대상 설명회와 병행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유무역협정(FTA)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기업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배출량 신고 관련 기업의 건의사항을 유럽연합에 전달하고, 향후에도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을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세관, 초고가 와인 불법수입 행태 적발

서울세관은 1병당 1,000만원이 넘는 판매용 고가 와인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한 A씨와 해외 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저가로 수입신고한 B씨와 C씨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월 2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시가 2억 8,000만원 상당의 판매용 와인 150병을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반입하면서 일반 음료수로 기재하는 등 다른 물품으로 가장해 밀수입했다. B씨와 C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해외 직구로 각각 와인 7,958병과 1,850병을 수입하면서 1병당 최고 800만원 상당의 와인을 20분의 1 수준의 가격(40만원)으로 거짓 작성된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가 신고해 B씨는 관세·주세 등 세금 약 13억원, C씨는 약 1억 4,000만원을 포탈했다.

서울세관은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이 부착되지 않은 수입 주류의 경우 불법 수입됐을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세관·오사카세관 협력회의 … 18년만 우호 교류 재개

부산세관은 5월 29일 부산 중구 청사에서 일본 오사카세관과 우호세관 교류 재개를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세관과 오사카세관은 1989년 양 세관 간 정보 교환 및 관세행정 효율 향상을 위해 우호세관 제휴 합의를 했으며, 2006년 이후로 교류 활동을 잠정 중단한 뒤 18년 만에 교류를 재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세관은 주요 동향과 무역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 등을 위한 세관협력 강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전자상거래 교역이 급속 성장함에 따라 물류비용 절감 및 신속통관을 위해 관련 제도와 경험을 공유했다.

장웅요 부산세관장은 “양 세관 간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무역 활성화 및 우범 거래 차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바다, 우리 무역의 미래와 과제

- 탈탄소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김인현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장

한국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연간 약 1,700조원에 달하는 수출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수출입 물동량의 99%는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에 의해 이뤄진다. 운송인은 안전하게 운송을 해주고, 화주는 운임을 지급한다. 화주는 저렴한 운임에 약속된 일자에 운송이 되면 좋다. 화주는 이런 운송을 제공하는 운송인을 찾는다.

우리나라 해상운송인이 저렴한 운임으로 제때 잘 운송해주면 우리 수출입화주도 경쟁력을 갖는다. 경쟁 국가의 상인보다 더 높은 운임을 지급하게 된다면 상품가격에 운임이 추가돼 외국의 매수인은 우리 상품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제때에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매수인이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저렴하게 제때 잘 운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수출입자는 자연스레 국제경쟁력을 갖게 된다.

즉, 수출입업자들에게 저렴하고 안정된 운송을 제공하는 바다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바다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환경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바다의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를 현재의 화석연료에서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소형원자로(SMR)로 변경해야 하는 조치가 있다.

어떤 연료를 사용하든 새로운 엔진 개발과 새로운 연료 공급은 선박의 운항비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선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에너지를 선택해야 운임경쟁력을 갖게 되고 화주로부터 선호될 수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주들이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다. 메탄올 등 다양한 선박 추진용 에너지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2025년 신조선 기준 LNG 선박 50%, 무탄소 선박 1%, 기존 화석연료 선박 49%다. 2050년에는 이것이 무탄소 67%, LNG 33%, 기존 연료선박 0%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연료추진 기술은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연료 순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연료탱크, 연료공급시스템, 추진 엔진 등 핵심 기자재에 대한 기술 개발 후에 선박건조가 착수된다.

LNG 연료는 선박의 공간을 가장 적게 차지한다. 사용이 안전하고 검증됐으며 벙커링 인프라가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화석연료인 관계로 탄소중립에는 부적합하다. 메탄올의 경우 친환경 연료이고 엔진을 일부만 개조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탄소를 배출하는 데다 그린 메탄올은 가격이 매우 비싸다. 현재 그린 메탄올은 세계적으로 연간 20만톤의 생산 수준으로 수요 총량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암모니아는 원활한 공급망을 보유하고 광범위한 글로벌 생산이 가능하지만, 큰 저장공간과 암모니아 전용엔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인체에 해로운 매우 강한 독성을 갖고 있어 기관실이 완전히 고립돼야 한다.

선주들은 선도적으로 에너지를 선정하기보다는 대세를 따라가는 추세다. LNG에 탄소포집장치를 붙여서 가는 것이 당분간의 대세일 수 있다. 여기에 암모니아도 사용 가능한 형태의 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장공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도 단점이다.

선박에는 선박 연료용 에너지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벙커링'이라고 한다. 탈탄소화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원의 사용은 에너지원의 공급 문제를 동반한다.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를 선박에 공급해야 한다. 머스크라인은 2022년 이미 미국의 메탄올 공급자와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필시 후발 선박회사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자신이 공급받은 메탄올을 비싸게 팔 수도 있다. 궁극적인 목표인 수소에너지는 캐나다 등의 LNG 생산국에서 암모니아로 만들어 액체로 우리나라에 수입해 와야 한다. 수입해온 암모니아와 수소를 위한 저장소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존 디젤유의 벙커링 사업에서 싱가포르를 이기지 못했다. 싱가포르가 지리적·경제적·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탈탄소 연료의 출발선 앞에서 모두 새롭게 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친환경 에너지의 '벙커링 허브'로 자리잡아야 한다. 정부가 울산항을 친환경 에너지원의 저장장소로 잡고 육성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당장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수소나 암모니아 연료를 사용할 수는 없다. 탄소를 배출하는 LNG, 메탄올 등을 여전히 사용하는 과도기를 필시 거치게 된다. LNG는 검증이 된 연료로 안전하고 구하기 쉽다. 운송중인 LNG를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LNG는 여전히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다른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면 각종 비용 증가와 저장공간의 확대 등 어려움이 많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액화이산화탄소 포집처리다. 선박이나, 발전소, 제철소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액화시킨 다음 이를 운송해 바다 깊숙한 곳에 묻게 된다. 이산화탄소포집저장

(CCUS)이 각광을 받고 있다. 액화된 이산화탄소의 운송을 위한 특수선박의 건조가 벌써 활발하다. 중간단계인 이산화탄소 포집장치의 활용도 정부가 지원하면서 과도기를 잘 넘어가도록 해줘야 한다. 중소선사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는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등을 활용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 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계산 및 지수화한 것이다. A에서 E등급까지 주어지는데, D.E등급을 받는 경우 입항거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IMO의 조치는 반드시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선주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 수 있다.

선박의 관점에서 탈탄소화는 두 가지로 진행될 수 있다. 기존의 선박에서 추진기를 개조하는 것이다. 선박을 새롭게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만 교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새롭게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선주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비용 발생은 선주의 시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늦었거나, 자연적인 선박의 노후화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안전정책에 의한 법률적인 결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보조를 해줘야 한다.

법률적으로 보면 이런 개조 및 신조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선박은 선주가 직접 운항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용선을 해서 사용한다. 기관의 설치는 선주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다. 기관은 선박의 일체가 되고 선주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용선자는 갖춰진 선박을 빌려서 사용할 뿐이므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선박연료유의 공급은 정기용선자가 부담한다는 식의 기제가 필요하다. 계약으로 용선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런 내용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선주가 부담한다는 식의 입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에너지원의 공급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운항자가 부담한다. 이 부분은 선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는 선박의 사용과 관련해 필요한 것이고 용선자는 선박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간 자다. 그러므로 에너지공급은 정기용선자가 책임질 사항이다. 디젤유에서 암모니아로 바꿔 에너지원으로 하려면 그 공급은 선주가 아닌 정기용선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다. 여기에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런 내용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정기용선자가 부담한다’는 식의 기제가 필요하다.

탈탄소화와 디지털화는 1,200척이나 되는 우리 외항상선이 모두 변화돼야 함을 의미한다. 조선소는 호황이면서 해운사는 울상이 되는 흐름이다. 미리 폐선을 하고 신조를 한다는 의미는 선주인 해운사의 재산권이 국제적인 조약과 법의 강제규정 실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호황을 누리게 될 조선소 측에서 바다의 친환경 유지를 위한 기금제도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 바다산업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정부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기금 확보를 통해 해운사들의 친환경 선박도입에 대한 제작비 지원도 있어야 할 것이다. 조성된 기금으로 건조자금이 부족한 영세한 소형선사의 친환경화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선박을 소유만 하고 임대해주는 선주사를 육성해 선주사가 선박을 건조하고 운항자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관의 교체비용, 신조선의 건조는 모두 선주사가 부담하고, 정기용선자는 용선료만 부담하므로 쉽게 탈탄소의 어려움을 넘길 수 있다.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해 운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선박들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를 선택해서 운항하면서도, 저렴하게 고장 없이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주면 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정부의 후견하에 우리 조선소와 선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제적인 동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결과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으로 귀결돼 우리 무역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증명서 제8번란 작성방법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콜롬비아 FTA
질문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호만 다를 뿐 같은 회사인 경우 제8란에 'YES'로 작성해도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돼야 하며, 한·콜롬비아 FTA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8란에 'No'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① 원산지증명서의 다른 란에 기재된 수출자와 생산자 정보를 통해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함이 확인 가능한 경우, ② 동일법인임이 관련 무역서류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면 제8란에 'No'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콜롬비아 FTA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

(1) 개요

FTA 특혜관세는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적용될 수 있으며, 각 협정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물품이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된다. 실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입당사국의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는데,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식, 양식 등은 각 협정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한·인도네시아 CEPA까지 총 21건의 FTA가 발효돼 있고, 우리나라는 협정에 따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 제도가 적용되는 협정과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신의 법적인 책임하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율발급 제도를 적용하는 협정으로 나뉜다.

(2)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증명서

2016년 발효된 한·콜롬비아 FTA는 협정문에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통일 서식(한·콜롬비아 FTA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으로 자율발급을 하는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수출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하며,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당사국의 영역으로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 수입뿐 아니라 원산지 증명서에 명시된 기간으로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그에 기술했 상품의 복수 수입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한 포괄원산지증명 방식이 허용된다.

협정문에 따르면, 한·콜롬비아 FTA에 의한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은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를 요청(협정관세 적용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는 ①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췄다는 수출자의 인지, ② 생산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③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췄다는 서면 신고서에 기초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다.

만약 수출당사국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라고 한다면, 한·콜롬비아 FTA상 제1란 [Exporter's Name and Address(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 제3란[Producer's Name and Address(생산자의 성명 및 주소)] 및 제8란[Producer(생산자)]에 대한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선택 기재)를 작성한다. 또한 제3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선택 기재)를 기재한다.

만약 둘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될 경우에는 ‘VARIOUS’로 적고, 제5란의 증명물품과 관련된 모든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선택 기재)가 적힌 생산자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수출자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로 적을 수 있다.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2. Blanket Period: YYYY MM DD YYYY MM DD From: _ _ _ _ / _ _ / _ _ / To: _ _ _ _ / _ _ / _ _ /
3. Produc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optional): E-Mail (optional):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제8란의 경우 수출자와 생산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작성하고 만약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하다면 원산지증명서 작성의 근거를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즉 제8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해 본인(원산지증명서 작성자)이 생산자일 경우 ‘YES’로 기재하되, 본인(원산지증명서 작성자)이 생산자가 아닐 경우 ‘NO’를 적고, 이 증명서의 작성 근거를 다음의 표에 따라 적어야 한다.

기재 문구	증명서 작성 근거
(1)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의 자격을 갖췄다는 본인의 인지
(2)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의 자격을 갖췄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증명서는 제외한다)에 대한 본인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품을 위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	7. Origin Criterion	8. Producer	9. 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제8란에 ‘NO’를 기재해야 함은 물론 (1), (2), (3) 중 하나의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 (1)의 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의 자격을 갖췄다는 본인의 인지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해당 물품이 한국産(또는 콜롬비아産)이 맞다는 수출자(작성자)의 인지가 있는 경우다. 이는 수출자의 경우 별도의 근거 서류 없이 FTA를 활용할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고 위험한 방식의 작성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조세심판원 사례를 보면 과세관청은 한·미 FTA에서 규정한 ‘수출자의 인지’란 쟁점 수출자가 여러 공급자에게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신빙성 있는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관세청의 해석에 대한 이견은 존재할 수 있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 2018년 공개된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상세 설명자료(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상 규정된 ‘인지기반’ 자율증명 시스템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은, 신빙성 있는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는 관세청의 해석과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세청의 해석에 따른 보수적인 방향으로의 업무방식은 크게 나쁠 것이 없다.

(2)에서의 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의 자격을 갖췄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증명서는 제외한다)에 대한 본인의 신뢰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이 FTA상 한국産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 수출자가 이를 신뢰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무상 생산자의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근거로 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생산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며 그 근거자료인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을 갖춘 상태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에서의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품을 위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아닌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3. 질문/답변 사례에 대한 해석

(1) 질문의 요지

질문은 수출자와 생산자가 서로 상이한 상황에서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부분은 원산지증명서상 작성 방법에 따르면 되지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호만 다를 뿐 같은 회사인 경우, 제8란에 'NO'로 작성하지 않고 'YES'로 작성해도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지에 대한 문의이다.

(2)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작성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모두에게 허용돼 있다고 하더라도 수출자가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산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해 외국으로 수출함에 있어서 수입자의 정보 등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FTA 실무상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수출자는 이를 기반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상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한 경우 제1란 그리고 제3란의 기재정보가 다르게 될 것이고 제8란에 대한 기재는 'NO'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질문 내용은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호만 다를 뿐 같은 회사일 경우(예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지만 대표자가 같고 사실상 함께 일하는 경우, 또는 법인등록번호는 같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등)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대한 답변은 제1란, 제3란에 대한 작성사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제8란에 대해서만

답변이 이뤄지고 있다. 답변 내용으로는 원칙적으로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하니 'NO'로 기재하는 것이 맞지만, ① 원산지증명서의 다른 란에 기재된 수출자와 생산자 정보를 통해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함이 확인 가능한 경우, ② 동일법인임이 관련 무역서류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면 제8란에 'NO'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정 가능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일단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르다면 'NO' 및 관련 번호[(1)부터 (3)]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수출 건의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판단은 수입국 과세당국(콜롬비아 관세청 등)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하자를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에 'NO'를 기재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한·콜롬비아 FTA 제3.24조(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 내용과 수입 관련 서류의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서류가 제출된 상품에 상응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무효화되지 않을 수 있고,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생산자에 대한 작성내용에 대한 사항이 사소한 차이 또는 형식적 오류에 해당해 원산지증명서가 그대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사항은 명확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보수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실제 서류상의 수출자, 생산자를 명확히 구분지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 캠핑용 버너 스토브의 품목분류

캠핑용 버너 스토브는 어느 호에 분류하나요?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불판·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barbecue)·화로·가스풍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 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7321.11-0000호에는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을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모든 요건에 맞는 기구류를 분류한다. (i) 일정 구역의 가열·취사나 끓임 목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ii) 고체·액체·기체연료·다른 종류의 에너지(예 :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며, (iii) 보통 가정이나 캠핑(camping)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한 물품이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로서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의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에 해당한다면, 제7321.11-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통관 / 특송물품 무료상품 금액 기재

해외 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했는데, 일부 부품에 문제가 있어 판매자가 일부 부품을 무료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상품가격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 직구 시 특송물품의 경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3] 통관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통관목록상 ‘물품 가격’은 미화(US Dollar)로 기재(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물품 구입 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합니다.

즉 무료상품은 실제 판매가격을 기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산지 / 비키니의 원산지표시

비키니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상·하의 중 한 군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요?

수입 세트의 물품(「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4항, 해당 고시 [별표 1] ‘수입 세트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원산지를 현품에 표시하지 않고 포장·용기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문의한 물품은 규정에서 정한 세트물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수입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 Made in China, Taiwan, ...)

③ 수입 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원산지표시 원칙) ④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른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따라서 하나의 포장단위로 묶여있더라도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세트물품으로 보기는 어려워 각각 현품에 라벨 봉제하는 방식으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 / 수입신고서 작성 관련

수입신고서의 란과 모델·규격은 최대 몇 개까지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입신고서의 란은 최대 999개, 모델·규격은 최대 99행까지 신고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석탄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시기 - 대법원 2022두61328(2023.2.2.) 사건 중심으로 -

최 천 식 | 관세인재개발원 교수

I. 처분 경위

원고는 외국 수출자로부터 ANTHRACITE(무연탄,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해 피고(세관장)에게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후 하역을 완료했다. 원고는 수출국 석탄검증기관이 선적지에서 발행한 분석증명서에 따라 무연탄으로 신고했다. 피고는 원고 대상으로 기업심사를 했고 원고가 우리나라 도착지에서 이 사건 물품을 자체 분석한 결과 휘발성분이 14%를 초과함을 근거로 유연탄으로 품목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원고는 유연탄으로 수정신고했고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했다.

원고는 수출국 석탄검증기관이 발행한 분석증명서에 따라 무연탄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既)납부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고 피고는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조세심판원의 기각 이유 ●

1. 「관세법」 제16조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청구법인)가 도착지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휘발성분이 14%를 초과했으므로 품목분류상 유연탄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증을 받는 등 원고가 수행하는 석탄품질검사의 신뢰도가 높으므로 원고가 도착지에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결과 역시 신뢰성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선적지와 도착지에서의 성상이 동일함을 입증하지 못했고 수출국 석탄검증기관이 발행한 분석증명서와 원고의 자체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양자의 성상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II. 원고의 주장

1. 수출국의 분석증명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American Society of Testing Materials)의 석탄 샘플 채취 방법에 따라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것이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무연탄으로 판단한 분석증명서는 정확성과 신뢰도가 높다. 그럼에도 피고는 석탄 샘플 채취에 관한 공식인증기관도 아닌 원고가 참고용으로 채취한 분석 결과만을 갖고 유연탄으

로 잘못 판단했다.

2. 선적항에서 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해 온 다른 과세관청의 관행과 입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관세법」 제6조 등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III. 판결 요지¹⁾

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과세물품 성질에 관한 기본적 판단 기준 등

(1) 「관세법」 제243조에서 수입신고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44조 제1항에서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입항전수입신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함으로써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됨을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에 과세물건으로 확정된 물품의 구체적인 성질이 어떠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수출입자의 증명서, 선적항 또는 하역항에서 검사기관이 수행한 분석 결과, 수입국 세관 등의 조사결과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나아가 관세법령에서 특정 자료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물품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각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과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품을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입항전수입신고에 있어서는 입항전 선적항에서 이뤄진 분석 결과만을 기초로 물품을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선적항 분석 결과 또는 입항전수입신고 시점과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점, 법원의 사실조화에 의하더라도 석탄을 입항전수입신고한 다음 입항 후 검사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석탄 성질이 변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선적항 분석 결과가 입항 이후에 이뤄진 분석 결과보다 반드시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원고는 2016.8.11.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선적항 분석 결과에 기초해 수입가격을 결정할 경우 이를 토대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점, 2017.1.26. 관세청으로부터

1) 대법원(2022두61328, 2023.2.2.)에서 심리불속행 판결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20누1075(2022.9.21.) 판결 중심으로 소개한다.

국제공인기관에서 채취, 조제된 시료는 석탄 분석시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점을 근거로 수출국의 분석증명서만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평가분류원의 회신 내용은 과세가격 산정에 대한 일반적 의견으로 보이고 품목분류에 관해서는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밝힌 점, 관세청장의 회신은 석탄의 분석검사 시료로 사용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자체로 수출국의 분석증명서나 원고의 자체 분석 결과의 신뢰도, 정확성을 판단할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입항전수입신고 당시 이 사건 물품이 「관세법」 별표에서 규정하는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이 14% 이하인 무연탄이었는지 아니면 14%를 초과하는 유연탄’이었는지 여부다.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자체 분석 결과 내용을 기초로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수출국의 분석증명서의 신뢰성 및 정확성 등

원고의 자체 분석 결과는 인부가 공구를 이용해 적재된 석탄 표면에서 수작업으로 시료를 채취해 이뤄진 검사 결과인 반면, 수출국의 분석증명서는 국제표준인 ASTM D2234 기준상 I-B-1(컨베이어 벨트로부터 낙하하는 지점의 전체 면으로부터 기계적인 방법으로 채취)에 따른 검사 결과이어서 자체 분석 결과보다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하면서 최초로 제출한 분석증명서에는 ASTM D2234 I-B-1 방식이 아니라 II-D-1(적재된 상태의 석탄 표면에서 수작업으로 채취)방식에 따른 채취·검사 결과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나) 원고가 제출한 수출국 검사기관 답변서에는 표본을 ASTM D2234 I-B-1 방식, 즉 기계적 방법으로 채취했는데 처음 제출된 분석증명서 중 ASTM D2234 II-D-1 방식으로 표본이 채취됐다는 내용 기재는 ‘사무상 오류’로 돼 있다.

(다) 위와 같이 원고가 수입신고를 하면서 처음 제출한 분석증명서에는 ASTM D2234 II-D-1 방식, 즉 적재된 상태의 석탄표면에서 수작업으로 표본을 채취해 검사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원고는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한 피고의 기업심사 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는 3년에 가까운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개별소비세 등의 감액경정청구를 하면서 수출국의 검사기관이 ASTM D2234 I-D-1방식으로 시료 검사했다는 바뀐 내용의 분석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수출국의 검사기관의 답변서에 의하더라도 분석증명서 내용이 변경된 이유 또한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라) 또한 수출국 검사기관으로서의 검사방법이나 업무수행방식의 신뢰도 등을 원·피고를 비롯한 국내 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고 수출국 검사기관이 스스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출국 검사기관이 석탄 표본을 어떠한 방식으로 채취·검사했는가 하는 점은 검사 결과가 기재된 분석증명서의 신뢰도나 정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이는데 수출국 검사기관이 분석증명서를 발급할 무렵 의미 있는 내용에 관해 ‘사무상 오류’를 반복했고 그 경위해명 또한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수출국의 분석증명서의 신뢰도 및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 이 사건 자체 분석 결과의 신뢰성 및 정확성 등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을 무연탄으로 판정한 이 사건 자체 분석 결과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년 한국인정기구(KOLAS)²⁾로부터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석탄의 KS 발열량과 수분 분석, 미연탄소 함량 등 석탄 품질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는 여러 항목을 검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석탄 품질에 관한 신뢰성 있는 시험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분야 중 하나는 석탄의 공업분석방법 기준(ASTM D7582)에 관한 것인데 공업분석방법은 수분, 회분, 고정탄소와 함께 휘발성 물질에 관한 분석이 기본을 이루므로 원고는 석탄의 휘발성 물질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서도 ① 「석탄산업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석탄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에서는 석탄 검사기준을 규정하면서 ‘2. 검사방법’ 중 ‘다. 시료채취방법’ 항목에서 “2) 시료는 석탄을 화차 또는 트럭에 실은 상태에서 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료는 로트에서 단위시료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료채취기에 의하여 무작위로 채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부가 시료채취삽을 이용해 시료 채취하는 방법을 검사방법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는 「석탄산업법」 제25조에 따른 석탄품질 검사사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공단 역시 시료채취삽 등 공구를 이용해 수작업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원고의 자체 분석 결과가 인부가 시료채취삽을 이용해 채취한 표본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해서 신뢰도 및 정확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2) 한국인정기구는 국제기구인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의 상호인정협정(MRA)에서 서명한 기관이다.

(나) 오히려 ① 원고는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발전공기업으로서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 등 발전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발전원료로 사용될 석탄의 성상과 품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발전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또한 석탄의 자체 분석 결과를 선적항의 분석 결과와 비교해 발열량, 회분, 유황분 등의 수치가 허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각 석탄 표본을 분석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허용오차를 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출자에게 대금 감액을 요구하기 위한 용도 및 유연탄과 무연탄을 혼합해 실제로 발전에 사용될 원료를 만드는 작업인 혼탄 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과 원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와 회계에 관해 감사원의 감사대상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석탄의 성상과 품질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결과 발전량이 저하되는 등 발전사업에 비효율이 발생하거나 석탄 수출업자에게 과도한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신뢰도나 정확성에 의문이 있는 분석증명서보다 자체 분석 결과가 신뢰도 및 정확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석탄의 발열량, 회분, 유황분 등의 측정을 중점에 두고 자체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체 분석 중 휘발성 물질 내용은 정확성이 낮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휘발분은 공업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인데 공업분석에 있어 국제적으로 공인된 석탄시험기관인 원고가 발열량, 회분, 유황분과 달리 휘발분에 관해서만 신뢰도가 낮은 분석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계약서에는 수출업자가 회분, 유황분, 발열량의 범위뿐만 아니라 휘발성 물질 범위를 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은 수치에 오차가 있는 경우 원고는 수출자에게 대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점, ③ 원고와 같은 발전공기업인 A社가 2016.7.13.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발송한 공문 및 2016.9.2. 관세청장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휘발분 함유량'을 발열량과 함께 석탄 품목분류와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명시한 점 등에 비추 보면 자체 분석 결과 중 휘발성 물질에 관한 내용이 발열량, 회분, 유황분 등에 관한 내용에 비취 정확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같은 한국전력공사 산하인 B社가 수입한 유연탄에 관해 ○○○ 세관장이 원고의 자체 분석 결과에 기초해 조세를 부과했다가 원고가 수출국 분석증명서를 기초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을 청구하자 이를 받아들인 사례를 들어 분석증명서가 자체 분석 결과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사례에서는 수입물품이 유연탄인지 무연탄인지 여부가 아니라 구체적인 발열량 수치가 얼마인지 여부가 문제된 점, ② 위 사례에서는 원고의 자체 분석 결과와 수출국 분석증명서 결과 중 어느 것을 따르는지에 따라 석탄 1kg 개별소비세 2원 차이가 발생했던 반면, 이 사건에서는 석탄 1kg당 개별소비세 19원의 차이가 발생해 사건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사례에서도 수출국 검사기관은 '사무상 오류'를 반복했고 내용을 수정한 분석증명서를 소급 작성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취

보면 위 사례를 근거로 분석증명서가 자체 분석 결과보다 신뢰도나 정확성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가 수출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자체 분석 결과에 나타난 성상과 품질이 수출업체가 계약을 통해 보증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석탄 인수를 거절하거나 대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원고가 자체 분석 결과에 따라 수출업체의 보증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 각 샘플의 단계적 분석을 거쳐 계약 내용대로 수출업체에 대금 감액을 요구해 받아들여진 사례도 존재한다.

(3) 그 밖의 사정

(가) 모든 수입물품을 상세하고도 정밀한 전수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데가 신속통관이라는 납세자 편의를 입항전수입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세관장이 입항전수입신고 대상 중 일부만 무작위로 선별 검사해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을 신뢰하고 과세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나) 입항전수입신고를 통해 수입된 물품은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과세관청 으로서는 더더욱 물품검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납세자이자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인 원고 스스로 자체 분석한 결과 무연탄이 아닌 유연탄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토대로 수정신고를 했다.

(다) 수출국 검사기관은 선적지에서 이 사건 물품을 분석하면서 매수인용 샘플과 심판용 샘플³⁾을 별도로 채취해 원고에게 송부했다. 원고는 자체 분석했고 개별소비세 과세가 되는 유연탄이라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원고는 매수인용 샘플 등을 통해 이 사건 물품 종류와 성상 등을 재차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물품도 모두 소진해 버렸다(더욱이 원고는 세관의 관세조사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물품이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연탄이라는 자체 분석 결과를 피고에 밝히지도 않았다).

(라) 이와 같은 수입물품 검사 및 과세 한계 속에서 이 사건 물품을 보유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자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정신고를 했고 매수인용 샘플 등을 통해 이를 반박할 수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역시 이 사건 처분 적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3) umpire sample로 이 사건 물품의 성상과 품질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한 제3자에게 분석 의뢰하기 위해 채취하는 샘플이다.

2. 신의성실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처분(선적항에서의 분석 결과만 토대로 한 과세처분)이 반복돼 굳어져 오면서 신뢰할 만한 과세관행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 원고에게 기초해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밖에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IV. 검토의견

먼 옛날 고생대 석탄기와 페름기 초, 즉 3억년 전 지구상에는 식물이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 당시 이러한 식물군이 죽어 넘어져 쌓여서 두터운 층을 이루고 이 층이 지하에 매몰돼 고열과 고압을 받으면서 식물성분 중 수소, 질소, 산소 등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탄소성분만 남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오늘날 석탄층이다.⁴⁾

고대에는 주로 금속을 녹이고 그릇을 굽는 연료로 사용됐으나 증기기관 발명 이후 석탄 용도는 대폭 확대됐다. 모든 산업에 있어 원동력으로 이용됐으며 특히 산업혁명 이후 급속히 성장한 운송 분야 발달과 함께 석탄은 개인 생활은 물론 전 산업에 있어 폭넓게 이용됐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중동의 풍부한 석유매장이 확인되고 석유공급이 확대되면서 석탄시장이 석유로 급속히 대체됐으나 1970년 두 차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석탄은 주로 발전용, 제철용으로 정착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석탄이라 해서 모두 동일한 특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생성환경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차이가 있다.⁵⁾ 그리고 그 차이는 용도와 상품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석탄은 식물질에서 변질돼 흩어진 섬유소(cellulose)가 오랜 기간 동안 박테리아에 의한 부패, 고압·고온 환경에서 탄화작용⁶⁾으로 석탄화가 진행된다. 석탄은 탄화정도에 따라 토탄, 이탄, 갈탄, 역청탄, 무연탄으로 구분된다.⁷⁾ 전반적으로 탄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업분석에서의 고정탄소가 증가하고 휘발분은 감소하므로 연료비(고정탄소/휘발분)는 증가한다.⁸⁾

4) 석유가 탄화수소의 혼합물인 데 반해 석탄은 벤젠고리를 위주로 방향족 화합물이 몇 개씩 서로 메틸렌 결합이나 에테르 결합으로 연결된 복잡한 고분자의 혼합체다.

5) 1957년 국제석탄학회는 성분 내에 중량 50% 이상의 탄소분이 함유돼 있고 용적 70% 이상의 탄소분이 함유돼 있어야 석탄이 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

6) 고열과 고압에 의해 식물층의 고유성분 중 수소와 산소가 빠져나가고 탄소만 남는 과정을 탄화작용(carbonization)이라 한다.

7) 구분기준에 있어서는 각 국가별로 독자 기준을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기준 없이 미국 광무국 분류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8) 후술하는 석탄의 종류와 분석방법 등은 한국석탄공사에서 2001년 발간한 <대한석탄공사 50년사> 부록 '석탄과 연탄 1. 석탄의 생성과 종류'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다.

● 탄화 정도에 따른 석탄의 구분 ●

- ① **토탄**은 식물 유해가 약간의 화학적 변화를 받고서 지표 아래에 묻혀 있는 것으로 거의 탄화작용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어두운 갈색을 띠고 탄소량이 적어 잘 타지 않는다. 흙 속에서 산출된 상태에서 70~90% 정도의 수분을 갖고 있고 대기 중에 방치하면 20~30%까지 수분을 제거할 수 있다.
- ② **이탄**은 토탄보다는 좀 더 탄화작용을 받은 것으로 석탄 생성의 제1단계라 할 수 있다. 이끼 등 식물이 습지에 퇴적해 분해 변화된 것으로 암갈색이며 광택이 없다. 이탄은 압력을 받아 수분과 휘발성분이 제거되고 고정탄소 함량이 증가하면서 '갈탄 → 역청탄(유연탄) → 무연탄 → 흑연'으로 변화한다.
- ③ **갈탄**은 두껍게 매몰돼 지하에서 고온의 지열과 높은 압력을 받아 상당히 탄화작용이 진행된 것으로 빛깔은 갈색 및 흑갈색이며 목질 구조를 잘 보존하는 경우도 있다. 채굴 직후 수분을 40% 이상 함유하고 있다가 이를 대기 중에 방치하면 15%까지 건조된다.
- ④ **유연탄**은 흔히 연소 시 연기가 많이 난다고 해서 무연탄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며 이탄과 갈탄 및 역청탄까지 포함한다. 무연탄과 유연탄을 가리킬 때 유연탄으로 대표되는 것이 역청탄이다. 역청탄은 휘발성물질이 많이 포함된 석탄으로 45~86%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바, 탄화도가 갈탄보다 높고 무연탄보다 낮다. 휘발분이 높아 연소가 잘 되고 탈 때 노란 불꽃을 내며 건류 시 역청 같은 물질이 생성된다. 휘발분이 많아 쉽게 연소되기 때문에 주로 화력발전용으로 쓰인다.
- ⑤ **무연탄**은 석탄 중 탄화작용이 가장 많이 이뤄져 휘발성분이 3~7%, 고정탄소 86~97%로 높다. 우리나라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석탄은 무연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⁹⁾ 점화점이 약 섭씨 490℃로 불이 잘 붙지 않지만, 화력이 강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탄다. 휘발분이 낮아 착화는 어려우나 불순물이 적어 연소 시 연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과거 군사용과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됐다.

석탄은 고정탄소(fixed carbon)와 휘발분(volatile matter)으로 구성된 연소성 물질과 비연소성 물질인 수분과 회분으로 구성돼 있다. 석탄분석방법으로 우리나라는 KS규격이 있고 미국의 경우 ASTM¹⁰⁾규격이 있다. 석탄의 화학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공업분석(Proximate Analysis)과 원소분석(Ultimate Analysis)이 사용된다.

공업분석은 석탄이 가열될 때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는 분석으로 석탄의 수분, 휘발분, 회분, 고정탄소, 발열량 등에 대한 분석이 실시된다.

● 석탄의 공업분석 ●

- ① **수분(Moisture)**은 석탄이 비등점 이상으로 가열될 때 석탄으로부터 방출되는 약간의 수증기로서 공업 분석상 첫 번째로 얻게 되는 분석치다. 석탄 수분은 석탄 운반에 있어 필요 없는 하중을 더해주며 연소 시 열효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석탄의 풍화작용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석탄 성형을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 ② **휘발분(Volatile matter)**은 수분이 제거된 시료를 925℃에서 7분간 가열해 감량을 구한 뒤 감량 시료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다. 휘발분 함유량은 석탄의 탄화도 증가에 따라 감소되는 양상을 보여주며 이러한 성질 때문에 휘발분은 석탄의 분류기준이 되기도 한다.

9) 1980년 이전까지 국내에서 사용되는 석탄의 거의 대부분이 무연탄이었기 때문이다.

10) ASTM은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의 약어로 각종 전문분야에서 표준시험방법 등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민간단체규격 제정기관이다.

- ③ **회분(Ash)**은 석탄을 800℃로 1시간 이상을 충분히 태운 후에 남은 잔류물로서 석탄 중에 함유된 광물질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석탄 내에 함유된 광물질 중량보다 약간 적고 화학성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같지는 않다.
- ④ **고정탄소(Fixed carbon)**는 휘발분이 제거된 석탄 연소에 의한 중량감소를 말한다. 이는 간접적인 방식 [고정탄소(%)=100-수분(%) -회분(%) -휘발분(%)]으로 산출한다.
- ⑤ **발열량(Calorific Value)**은 석탄 내에 내장된 화학에너지 총량이며 이는 연료 가치를 알려주는 요소다. 발열량은 국내에서 품질 규격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무연탄이 같은 탄화 정도의 외국 석탄에 비해 발열량이 낮은 것은 석탄 생성 후에 일어난 심한 지각변동 시 탄층에 광물질이 2차적으로 더욱 많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원소분석은 석탄의 주요 구성요소인 탄소(C), 수소(H), 산소(O)와 기타 질소(N) 그리고 유황(S) 등에 대한 분석이다. 분석기준은 무수기준(Dry basis)으로 하며 여러 종류의 석탄을 서로 비교할 때는 무수무회기준(Dry ash free basis)에 의한 분석치를 사용한다.

● 석탄의 원소분석 ●

- ① **탄소**는 석탄 주성분이며 순수한 석탄에 대한 탄소함량은 갈탄이 대략 60~70%, 역청탄이 70~85%, 무연탄이 85~95% 범위에 있다. 또한 수소함량은 갈탄이 5~7%, 역청탄 4~6%, 무연탄 2~4% 범위로서 이들은 탄화가 진행됨에 따라 탄소함량은 증가하고 수소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 ② **질소**는 석탄의 유기질 물질 내에서 특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석탄 내에 함유되는 질소 함유량은 1~2%이며, 대부분 석탄은 1~1.5% 질소를 함유한다.
- ③ **유황**은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유기성 유황과 무기성 유황으로 대별된다. 유기성 유황은 석탄 생성 시 근원 식물로부터 유래돼 석탄 중에 균일하게 분포된 것이고 무기성 유황은 석탄 생성 후에 황산물이나 황산염으로 존재해서 지하수 등으로부터 2차적으로 석탄 내에 혼입된 것이다.
- ④ **산소**는 직접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산식[산소=100-(탄소+수소+질소+유황+회분+기타)]에 의해 산출된다.

HS 분류 체계는 석탄을 휘발성 함유량에 따라 유연탄과 무연탄으로도 구분한다. 관세율표 제27류의 소호 제2701.11호에서 ‘무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4 이하인 석탄을 말하며, 제2701.12호에서 ‘유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4를 초과하고, 물을 함유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발열량이 Kg당 5,833kcal/kg 이상인 석탄을 말한다. 무연탄은 HS 제2701.11호에 분류되고, 유연탄은 제2701.12호에 분류되며 모두 기본관세율은 0%이다. 그러나 무연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세이지만 유연탄은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석탄 가격의 단가 결정은 발전회사의 주된 관심 사항이다. 계약단가는 석탄 탄종의 품목분류 결정인 휘발분 함유량과 발열량에 따라 정해진다. 발열량은 구매단가를 협상하는데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거래가격과 품목분류 및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¹¹⁾ ●

구분	2017.1.1. 이전	2017.1.1. 이후
순발열량 5,500kcal/kg 이상	27원/kg	33원/kg
순발열량 5,500kcal/kg 미만 5,000kcal/kg 이상	24원/kg	30원/kg
순발열량 5,000kcal/kg 미만	21원/kg	27원/kg

석탄보증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는 석탄 품질을 인증하기 때문에 곧 단가를 결정하는 보증서라고 볼 수 있다.¹²⁾ 성분분석서는 통상 선적항에서 발행되는데 선적항 성분분석서는 수출자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3의 감정전문기관(Surveyor) 중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감정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감정기관은 선적물량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ASTM에 따라 시료를 분석한다.

ASTM에서 공인한 시료분석법은 2가지가 있다. 첫째 Auto Sampler를 통한 시료채취 방법으로 Mechanical Sampling 방식, 즉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이송 중인 석탄이 벨트로부터 수직 하향돼 낙하하는 지점에서 Auto Sampler를 통해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 Manual Sampling 분석방법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ASTM방식에 따른 시료채취방법 분류표¹³⁾ ●

구분	분류	채취방법	작업방식
원칙	Mechanical Sampling (type-Ⅰ)	classificationⅠ-A-1	이송 중인 컨베이어벨트를 정지시킨 뒤 전체 단면에서 채취
		classificationⅠ-B-1	컨베이어벨트로부터 낙하하는 지점의 전체 면에서 채취
classificationⅠ-C-1		컨베이어벨트로부터 낙하하는 지점의 가운데에서 채취	
예외		classificationⅠ-D-1	적재된 상태의 석탄 표면에서 채취
	Manual Sampling(type-Ⅱ)		사람에 의한 채취

국제 공인감정기관은 선적항에서 품질이 동일한 대표시료 3종류 sample을 조제하는데 ① analysis sample(국제공인감정기관 분석용), ② buyer sample(수입자 송부용), ③ umpire

11) 2015년 수입 당시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이다.

12) 황화중, 'WTO과세가격결정원칙에 대한 관세법상 과세물건확정의 시기적정성 연구(2019)', 조선대학교 박사논문, p.67.

13) 한국발전공기업협력본부 참고자료

sample(분쟁 시 중재를 위한 제3국의 국제공인감정기관 송부용) 등이 있다. 공인감정기관이 analysis sample 성분분석서를 작성해 수출자에게 제출하고 나면 수출자는 선적서류와 함께 buyer sample을 밀봉해 수입자에게 송부한다. 수입자는 buyer sample과 수입석탄을 도착항에서 자체 분석한 값과 대조를 통해 허용오차 범위 이내면 선적항 성분분석서를 수용하고, 벗어난 값이면 수출자와 합의를 통해 대금할인 등을 통해 정산절차를 취하게 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umpire sample을 제3국의 국제공인감정기관에 의뢰하거나 중재판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석탄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에 대해 규율하는 국내법으로는 「석탄산업법」(제25조)이 있다. 동법을 위임받은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 '2. 검사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2] ●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석탄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 <중략> ...

2. 검사방법

가. 발열량 측정방법

발열량의 측정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E 3707(석탄류 및 코크스류의 발열량 측정방법)에 따른다.

나. 휘발분 측정방법

휘발분의 측정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E Iso 562(무연탄과 코크스-휘발성 물질의 결정)에 따른다.

다. 시료채취방법

시료 채취는 다음 항목에 의하되, 거래 당사자를 채취 현장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1) 수요처별·등급별로 화차 5량 이하 또는 트럭 10대 이하를 1로트(lot)¹⁴⁾로 한다.
- 2) 시료는 석탄을 화차 또는 트럭에 실은 상태에서 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사고를 고려하여 내릴 때 및 실을 때에도 채취할 수 있다.
- 3) 시료는 로트에서 단위시료를 일정한 가격을 두고 시료채취기에 의하여 무작위로 채취한다.

다음으로 대한석탄공사연구소는 「대한석탄공사법」 제1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국내외에서 생산 판매되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¹⁵⁾ 해당 연구소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분석 업무지침' 제5조에 따라 시험 및 품질분석의 항목별은 미국재료시험 협회의 시험기준에 의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의 해당 항목으로 등록된 방법을 내용 및 취지에 맞게 준용해 분석한다. 국내발전회사들은 자체적인 분석 매뉴얼을 수립해 운용하고 있는데 그 중 A社の 시료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¹⁶⁾

14) Lot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품위를 결정하려는 하는 석탄류의 단위량이다.

15) 분석의뢰는 정부기관, 법인 및 개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6) 황화중, 전게서, p.69

● 시료채취 및 조제방법 ●

구분	상세구분	Mechanical Sampling	Manual Sampling
시료채취	사용기구	Auto sampler	사람이 직접 채취
	적용기준	ASTM D2234 & D3470	ASTM D2234
	시료채취 수	116회	116회, 적재상태 시 50회
시료조제	사용기구	crusher, slot-type divider	삽, 절구 등
	조제방법	① Crusher로 분쇄	① 삽에 의한 원추사분법 축분
		② 분리기로 20kg씩 분리	② 1시간 정도 건조
		③ 균질화(혼합) 작업	③ 절구로 10mm로 분쇄, 축분
		④ slot type divider로 분리	④ 건조 후 60mesh 이하 분쇄
		⑤ 목적별 추가 분쇄, 건조	⑤ 목적별 추가 분쇄, 건조

한편 원고가 수출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자체 분석 결과에 나타난 품질이 수출자가 계약을 통해 보증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석탄 인수를 거절하거나 대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분쟁과 관련해 분쟁해결 준거법이 되는 ‘국제물품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s of Goods)’¹⁷⁾ 규정을 살펴본다.

CISG 제35조는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가의 여부는 일차적으로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한 수량, 품질, 종류, 용기 등에 따른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CISG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것과 다른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계약물품 부적합으로 봄으로 수량이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인도로 심지어 다른 종류의 물품을 인도하는 것도 모두 계약에 부적합한 것이다.

제36조에서는 “(1)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그 부적합이 위험 이전에 판명된 경우라도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매도인은 제1항에서 정한 때보다 후에 발생한 부적합이라도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의무위반에는 물품이 일정기간 통상의 목적이거나 특별한 목적에 맞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증 또는 특정한 품질이나 특성을 유지한다는 보증에 위반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8조는 물품에 대한 매수인의 검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1) 매수인은 실행가능한 단기

17) CISG는 1980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제정했다.

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품검사의무는 독자적인 의무가 아니라 제39조의 부적합통지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즉 매수인이 물품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만약 검사를 했더라면 발견했을 부적합을 발견하지 못해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해당 규정은 검사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만 정하며 검사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제50조는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은 현실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 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 그때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된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에게 대금을 감액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다. 대금감액은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손해배상과 유사하지만 요건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대금감액은 손해 발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손해배상에서와 같은 면책사유(제79조)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대금감액의 산정기준은 계약에 적합한 물품과 현실로 인도된 물품 간의 가치 차이에 의한다. 이 산정기준의 시점은 모두 ‘인도 시’다. 산정기준의 장소는 언급이 없으나 보통 인도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인도장소를 정한 제31조에 의하지만 송부매매나 운송 중의 매매인 경우에는 물품의 목적지를 대금감액의 산정기준 장소로 본다.¹⁸⁾

석탄의 공업분석 중 특히 휘발성 물질과 발열량의 정확한 계산은 계약단가의 결정과 함께 석탄 발전기업의 운영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유연탄과 무연탄을 혼합해 실제로 발전에 사용될 연료를 만드는 작업인 혼탄 비율을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1차적으로 석탄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수출국의 공인감정기관이 발행한 분석증명서(COA)이다. 수입자는 계약물품 적합성을 검사하기 위해 2차적으로 자체 또는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의뢰하게 된다.

사실 석탄은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생성됐음을 비취 볼 때 선적항에서 도착항에 이르기까지의 극히 짧은 운송기간 동안 성분이 갑자기 변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해상운송 기간은 17일 정도로 기간이 매우 짧아 산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석탄전용선의 화물창은 두꺼운 철제의 해치 커버로 화물창 입구를 막기 때문에 외부공기와 수분 유입이 차단되며, 운송인은 물품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운송 시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때문이다.¹⁹⁾

그렇다면 수출국 석탄검증기관과 수입자의 자체시료분석에 최대한 주의의무를 갖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샘플링검사를 수행했다면 양자의 결괏값은 동일하거나 최소한 오차 허용범위 내로

18) 법무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해설(2005)>, p.126

19) 실제로 해상운송 기간 동안 쟁점물품 손상이 없었고 그에 따른 클레임 제기도 없었다(조세심판원 조심2023관0069 참조).

나타나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따라서 양자의 값이 동일하다면 비록 수출국의 분석증명서를 채택하더라도 석탄 단가 및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양자의 결괏값이 다르게 나온다면 무역분쟁 요소로 작용되며 나아가 계약단가 사후 조정요인 및 조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에는 어느 분석증명서를 신뢰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① 석탄 품질을 분석한 주체에 대한 신뢰성, ② 주체가 수행한 분석방법에 대한 신뢰성, ③ 계약분쟁에 대한 처리와 그 결과에 따른 당사자의 수용 여부 등 3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① 석탄을 분석한 주체 신뢰성을 살펴보면, 수출국 소재 석탄검증기관이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기관인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대상판결에서 이에 대한 쟁점이 없어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기관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원고는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²⁰⁾로부터 국제공인 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원고는 석탄 품질 등에 관한 신뢰성 있는 분석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공식기관으로 볼 수 있다.

② 분석 주체가 수행한 분석방법의 신뢰성을 살펴보면, 대량으로 수입되는 석탄 특성상 전수 검사는 불가능하므로 샘플링 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²¹⁾ 원고는 자체 분석을 할 때 인부가 공구를 이용해 적재된 석탄의 표면에서 수작업으로 시료를 채취해 이뤄진 결과인 반면, 수출국의 분석증명서는 국제표준인 ASTM D2234 I-B-1 방식에 따른 검사 결과이어서 자체 분석 결과보다 신뢰성 및 정확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STM은 석탄 시료채취·조제방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Mechanical Sampling, 예외적으로 Manual Sampling을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Mechanical Sampling과 Manual Sampling 모두 분석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사건 물품이 ASTM에서 정한 공인기준대로 분석이 됐다면 어떤 시료 채취·조제방법을 사용했는지를 불문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더욱이 우리나라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Manual Sampling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계 각 나라는 저마다의 국내규격이 있는데 한국 KS, 미국 ASTM, 일본 JIS, 중국 GB, 유럽연합 EN이 있다. 예컨대 거래당사자 간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석탄을 수입할 때 석탄의 품질분석방법으로 중국 선적지에는 GB를 사용하고 한국 도착지에는 KS를 사용하고 국제공인기준인 ASTM

20)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한국인정기구로 「국가표준기본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등에 대해 평가해 특정 분야에 대한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정기구이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21) 전수검사는 검사를 위해 제출된 모든 제품에 대해 시험 또는 측정해 그 결과를 규격과 비교해 양품만을 합력하는 검사를 의미한다. 반면 샘플링 검사는 불량품이 확실치 않은 Lot에서 샘플을 임의로 뽑아 샘플의 결과와 Lot의 판정기준을 대조해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양국의 분석 결과가 상이할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계약부적합’이라는 이유로 대금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계약 내용이 있다고 할 경우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고 그 결과를 수출자가 수용했다고 세관은 당연히 수입자의 분석 결과값을 신뢰하고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런데 세관에서 중국의 GB나 한국의 KS는 국제적으로 공인받지 못했으니 국제적으로 공인된 미국 ASTM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Manual Sampling이 아닌 Mechanical Sampling을 요구하는 것은 CISG 제38조 및 HS 협약 그리고 상관행 존중과 사적 자치의 무역거래원칙에 맞지 않는 직권남용행위이다. CISG 제38조에서는 물품검사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만 정하고 검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HS 협약에서도 무연탄과 유연탄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도 규정돼 있을 뿐 검사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ASTM의 Mechanical Sampling만 유일하게 석탄 품목분류를 위한 공식적인 분석방법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 거래당사자가 각 나라에서 정한 국내규격에 따른 석탄 분석방법을 인정했다면 세관장은 그 분석 결과를 인정해 과세근거로 삼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래상대방이 이익이 있는 경우 해결 결과에 따른 최종값을 받아들이면 된다.

또한 Mechanical Sampling이 Manual Sampling보다 절대적인 신뢰성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물론 Mechanical Sampling이 Manual Sampling에 비해 효율적으로 기계적 분석을 하므로 신뢰성이 더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수입물품 전체 중 어느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할 것²²⁾인지와 시료 채취를 얼마만큼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예컨대 Mechanical Sampling 횟수가 110회에 그친 경우와 Manual Sampling 횟수가 200회인 경우 Manual Sampling이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시료 채취 부분과 시료 채취 횟수가 시료 채취 방법보다 신뢰성에 있어 더 중요하다. 다만 Manual Sampling이 안전사고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Mechanical Sampling이 안전사고 예방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 ‘2.검사방법’에서도 안전사고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본 사건의 경우 수출국 석탄검증기관의 분석내용 번복으로 분석증명서의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수출국 검사기관의 답변서에는 표본을 ASTM D2234 I-B-1 방식(기계적 방법으로 채취)했는데 처음 제출된 분석증명서 중 D2234 II-D-1 방식(사람에 의한 채취)으로 표본이 채취됐다는 내용 기재는 ‘사무상 오류’라고 했고 이 점이 원고의 패소원인이 됐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STM이 공식적인 석탄 채취방법으로 Mechanical Sampling과 Manual Sampling 모두 허용하고 우리나라는 Manual Sampling을 원칙으로 한 이상, 양자 간 시료 분석 방법의 우월성을 따지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22) 세관장이 중국산 냉동고추(관세율 27%)와 건조고추(관세율 270%)가 혼합된 물품을 검사할 때 어느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가에 대해 종종 수입자와 마찰요인이 되기도 한다.

③ 계약 분쟁에 대한 처리와 그 결과에 따른 당사자의 수용 여부가 분석증명서의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자체 분석에서 확인된 품질이 계약에서 보증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석탄 인수를 거절하거나 대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자체적으로 물품검사를 하고 있다. 원고의 자체검사는 실제로 발전에 사용되는 무연탄과 유연탄의 정확한 혼합작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검사다.

수출자는 원고가 물품 검사하도록 수출국의 석탄검증기관이 발행한 성분증명서와 함께 buyer sample을 송부하고 있다. 원고는 buyer sample과 수입석탄을 도착항에서 자체 ASTM 시료 채취 방법으로 분석한 값과 대조를 통해 허용오차 범위 값이면 수출국의 성분분석서를 수용하고 허용범위를 벗어난 값이면 수출자와 합의를 통해 물품대금 할인 등을 통해 정산절차를 취하게 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umpire sample을 제3국의 국제공인감정기관에 의뢰하거나 중재판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출국의 분석증명서와 수입국의 분석증명서의 신뢰도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은 ① 수출국 분석증명서와 수입국 분석증명서의 신뢰도가 동등한 경우, ② 수출국 분석증명서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 ③ 수입국 분석증명서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 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의 유형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수출국 분석증명서를 채택하든 수입국 분석증명서를 채택하든 같은 분석값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금감액청구 등의 클레임 청구는 물론 무역분쟁도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과세가격과 조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관세청 유권해석에서도 이러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 세관장은 석탄의 품목분류와 관련해 관세청장에게 질의했고, 관세청장이 2018.9.7. 세관장에게 선적 시와 수입신고 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선적지의 성분증명서에 의해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신고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²³⁾

엄격히 따진다면 원고가 수입통관 이후에 수행한 자체 분석 결과는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물건을 확정하는데 소급 적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수입신고 시점에서 시료를 채취·분석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점에 시료의 채취·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신뢰자료의 공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수입국에서 행한 분석 결과값을 과세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²⁴⁾

어떤 물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감가상각된다고 가정했을 때 수입신고

23) 관세청 심사정책과-2382호(2018.9.7.)

24) 실무에서 자동적으로 도착지 분석 결과값을 과세근거로 채택하려는 인식이 있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적지 분석시점은 수입신고 시점에서 5일 전이고 도착지 분석시점은 수입신고 시점에서 10일 이후라면 수입신고 시점에서의 과세물건확정은 수입신고 시점에서 가까운 도착지 분석 결과값을 과세근거로 채택하는 것이 「관세법」 제16조의 취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더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²⁵⁾

문제는 선적지와 도착지에서의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경우다. 이때에는 어느 것의 분석 결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무역분쟁 및 품목분류와 세금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 사건 물품과 같이 선적지에서 하역 및 수입신고에 이르기까지 물품의 성상이나 수량에 변함이 없다면 선적지와 도착지의 분석 결과 중 어느 것이 수입물품 품질(휘발분이나 발열량 등)을 가장 정확하게 보증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해 ②의 유형과 ③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의 유형인 수출국 분석증명서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 수입자는 자체 분석한 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어서 수출국의 분석증명서를 수용할 수 없다. 반면 ③의 유형인 수입국 분석증명서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는 수출자 역시 수출국의 석탄검증기관이 발행한 성분증명서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므로 수입국의 분석증명서를 수용할 수 없다. 이때 중요한 점은 거래당사자들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순간 ‘계약 부적합’에 따른 대금 감액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오류를 인정 못하는 경우에는 무역분쟁으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계약에서 합의한 분쟁 해결 조항에 근거로 해서 중재에 따라 처리하든지 아니면 국제법인 CISG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일방이 제기한 클레임을 타방이 이를 수용할 경우에는 타방의 분석 결과값이 오류가 있다고 ‘간접사실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클레임을 제기한 당사자의 분석 결과값을 과세근거로 삼을 수 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자체 분석한 결과값을 수출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 원고의 자체 분석한 값을 과세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만일 거래당사자가 상대방의 성분 분석한 결과를 수용하지 못해 결국 중재수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자가 선적완료일부터 90일 기간 동안 보관한 제3국의 국제공인감정기관 송부용 umpire sample을 토대로 어느 국가의 분석 결과가 정확한지 가릴 수밖에 없다. 제3국의 감정기관의 분석 결과 수입국의 분석 결과가 정확하고 수출국의 분석증명서가 부정확하다면 수입국의 분석 결과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수출국의 분석증명서가 정확하고 수입국의 분석 결과가 부정확한 경우 이때에도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는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이라고 해서 부정확한 수입국의 분석 결과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5) 반면, 관세평가에서는 수입항 도착 이전에 합의한 가격을 수출판매한 가격으로 봐 과세가격으로 채택하는 반면, 수입 후의 합의한 가격은 국내 판매가격에 해당돼 거래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의 검증기관이 인정한 수출국의 분석증명서를 배제하고 부정확한 수입국의 분석 결과를 채택하는 것은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 규정의 진정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국세기본법」 제14조²⁶⁾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부정확한 수입국의 분석 결과는 수입물품이 갖고 있는 실제 품질, 즉 휘발분이나 발열량을 객관적으로 보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정확한 수입국의 분석증명서는 무역분쟁과정에서 입증자료로서의 증거력이 떨어지므로 수입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제3국의 국제공인감정기관의 분석 결과가 수입국과 수출국의 분석 결과와 전혀 다르게 나온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이때 모두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 이를 수용했다면 제3국의 국제공인감정기관의 분석 결과를 과세근거로 채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탄광 채굴에서 발전소 연료로 투입될 때까지 물품 성분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을 단지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대한 해석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각 감정기관이 발행한 성분증명서에 대한 ‘신뢰도에 관련된 선택 문제’라고 봐야 한다.

결국 석탄의 운송과정에서 변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의 분석 결과가 정확성이나 신뢰도 측면에서 전체 석탄의 품질에 가장 잘 보증하는지를 선택하는데 있고 이에 따라 과세가격과 개별소비세율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자체 분석 결과에 따라 수출업체의 보증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계약 내용대로 수출업체에 대금 감액을 요구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다. 이는 곧 수출자는 수입자의 분석 결과를 신뢰했다고 볼 수 있으며 수출국의 분석증명서는 부정확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만일 수입국의 분석 결과가 부정확하고 수출국의 분석증명서가 정확하다면 수출자는 분명히 원고의 대금 감액요구를 거절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수출자가 원고와 무역분쟁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고의 자체 분석 결과를 신뢰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원고는 자체 분석한 결과 수출국의 분석증명서와 다르게 품질이 나온 경우 원고가 자체 분석한 결과가 정확한지를 buyer sample을 통해 대사검증을 하거나 국내 제3의 국제공인기관(KOTITI시험연구원 등)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umpire sample을 제3국에 송부해 수출국의 분석증명서와 원고가 수행한 자체 분석 결과 중 어느 것이 정확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물품과 buyer sample 모두 소진해 버렸다. 이러한 원고의 행동 배경에는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고 수출자도 그간의 축적된 거래를 통해 원고의 자체 분석 결과를 신뢰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26)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황화중 박사 논문(2019년)에서 발전회사들은 도착항 시료 채취 분석 결과와 선적항에서 국제 공인검정회사가 발행한 성분증명서와 차이가 계약에 명시된 허용오차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수립한 매뉴얼대로 수출자가 보관한 umpire sample 분석을 요청해 결과에 따라 석탄의 가격과 품질을 최종 결정해 확정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내부 매뉴얼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공업적 또는 화학적 분석을 통해 그 데이터 값에 대해 향후 문제가 될 클레임 등에 대비해 ERP전산시스템 및 SAP에 자료를 저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자체 분석한 결과가 수출국의 석탄검증기관이 발행한 분석증명서보다 더 정확함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세관 입장에서든 과세근거로 삼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신의칙과 관련된 주장을 보면, 발전회사 A社は 2016.7.14. 선적지의 분석증명서로 석탄의 과세 가격 및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8.11. 과세가격은 양 당사자가 선적지 COA를 기초로 계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담당부서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회신(민원질의-2016-0010호)한 바 있다.

원칙적으로 과세가격 평가는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하는 것이며 품목분류는 HS 협약에 따라 하는 것이다. 과세가격 평가는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이면 충분하다. 즉 석탄의 거래가격을 선적지 COA의 발열량을 기초로 가격을 합의했다면 그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거래가격이 적용될 경우 가격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는 무관하다. 당사자가 거래에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으로 해당 가격을 채택했다는 것만으로 족하다. 협정상 거래당사자가 거래가격을 책정한 사유가 정당한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세관이 할 일이 아니다.²⁷⁾ 다만, 도착지 COA의 발열량에 따라 가격을 사후 조정될 수 있다는 계약조항이 있다면 이는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잠정신고 후 도착지 COA발열량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품은 시간 경과에 따라 품질이나 외형상에 변화가 발생된다. 계약 당시의 물품 성상이 수입신고 시에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품목분류에 문제가 없지만 계약 당시 또는 선적 당시 및 수입신고 시에 물품 성상이나 수량에 변화가 있다면 비록 계약서상 선적지 COA에 따라 품목분류를 한다는 당사자 간의 계약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무시되며,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상이나 수량에 따라 품목분류를 해야 한다. 따라서 관세평가분류원의 질의회신은 품목분류를 선적지 COA로 한다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발전회사 B社は 2014.9.18.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신고납부한 개별소비세(NCV : 5,146kcal/kg)에 대해 선적지의 분석증명서상 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재계산(NCV

27) Saul L. Sherman & Hinrich Gkashoff, <Commentary on the GATT Customs Valuation Code>, p207.

: 4,854kcal/kg)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이를 인정해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 세관장이 2018.1.4. 5개 발전사에게 유연탄을 통보했다가, 2018.5.18. 이중 '가. 개별소비세 관련 유연탄 수입 신고방법' 안내 부분을 취소함으로써 선적항 분석증명서를 근거로 품목분류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 세관장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행정지도를 했던 사항 중 일부를 철회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선적항에서의 분석 결과만 토대로 한 과세처분이 반복돼 굳어져 오면서 신뢰할 만한 과세관행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 사례를 종합해 보면 과세관행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이상 장기간 동안 일관된 관행이 있어야 됨을 요구하고 있다.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경정청구 질의에 대해 2018.9.7. 선적 시 물품의 성질·수량이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수량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선적지의 성분증명서에 근거해 품목 분류 및 과세가격 신고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선적 시와 하역 시 물품 성상이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적지 분석증명서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 이 점에서도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으며 원고 또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기초해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

V. 맺는 말

이 사건 석탄과 같이 수출항에서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물품 성상이나 수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분석기준이나 방법을 사용했다면 어느 장소에서 분석하든 동일한 분석 결과값이 나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선적지의 성분증명서를 사용해도 품목분류와 세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물품 성상이 동일함에도 상이한 분석기준이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분석 결과값이 다르게 나온 경우에는 분석기준이나 방법이 HS 협약에서 인정하는 분석기준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무연탄에 대한 분석기준에 대해서는 HS 협약에서 규정된 바는 없다. 다만, 석탄의 품질검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규격이 있고 미국의 경우 ASTM규격이 있다.

두 규격은 Mechanical Sampling과 Manual Sampling 모두 석탄의 품질검사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HS 협약이나 개별소비세법령에서 분석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지 Mechanical Sampling의 우위성이나 신뢰성을 내세워 다른 시료 채취 방법을 부인하는 것은 적법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료 채취 방법보다는 시료채취 횟수에 있다. 즉 시료채취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분석 결과 신뢰성은 높아진다.

다음으로 물품 성상이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분석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적지와 도착지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경우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 선적지와 도착지의 분석 결과 모두 신뢰할 수 있다면 과세물건 확정은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도착지의 분석 결과를 우선해 과세근거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선적지와 도착지의 분석 결과 중 어느 하나가 분석오류가 발생해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면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조건 도착지의 분석 결과를 과세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선적지 또는 도착지 분석 결과 중 오류가 없는 자료를 선택해 과세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간접사실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에 따라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즉 당사자가 무역분쟁 제기를 포기하거나 대금 감액을 허용했다면 거기에 기초한 분석 결과는 거래당사자가 상호신뢰해 수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자료는 과세근거로 채택할 수 있다.

진공펌프의 품목분류 기준

- 관세율표 전반의 '용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진용 | 서울세관 심사2국 심사5관

I. 머릿말

2022년 7월, 제6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진공펌프(vacuum pump)'의 품목분류를 논의했다. 주된 쟁점은 안건 물품이 제8414.10-9010호에 분류되는지, 제8414.10-9020호에 분류되는지, 제8414.10-9020호에 분류되는지였다.

● 진공펌프(제8414.10-90호 이하)의 「관세·통계통합분류표(HSK)」 분류 체계 ●

HSK	HSK 용어
제8414.10-9010호	반도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제8414.10-9020호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제8414.10-9090호	기타

이때 특정한 진공펌프가 제8414.10-90호 아래 10호, 20호, 90호 인지는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이 해당 여부, 진공펌프가 사용되는 용도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진공펌프의 분류기준을 정리하려면, 진공펌프의 HSK 호의 용어가 용도를 기초로 한 표현이며, '용도'를 기초로 한 표현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존재하므로 '용도'라는 관세율표 용어의 전반적 분류기준 설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용도'와 관련한 명시적인 해석 기준 또는 지침이 현재 없어 품목분류 분쟁이 자주 발생했고, 통일적인 품목분류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용도'에 대한 일관된 분류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필자가 2022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에 제출한 내용을 보완·수정한 것을 토대로 '용도'와 관련한 품목분류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본론

□ 용도에 기초한 품목분류와 주요 쟁점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가 HS 품목분류표를 바탕으로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와 수출입 관련 규제를 정한다. 수많은 상품을 하나의 분류체계 안에 오직 한 곳에 분류되도록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관세율표에서 상품을 구분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은 상품명이지만, 용도, 기능, 성분 등과 같은 요소가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용도와 관련해 호의 용어는 ‘~용’, ‘~에 사용되는’(‘for’, ‘use’, ‘used’), ‘~용 기기의 것’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표현돼 있거나, 묵시적으로 용도를 표현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용도에 기초해서 품목분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용도에 기초한 다양한 품목분류 호의 용어 ●

HSK	호의 용어(국문)	호의 용어(영문)
제0102.21-1000호	젖소	For milk
제7319.40-2000호	반도체 웨이퍼·반도체 디바이스의 측정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핀	Pin used for measuring or checking semiconductor wafers or device
제8413.11-0000호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Pumps for dispensing fuel or lubricants, of the type used in filling-stations or in garages
제8414.51호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	Table, floor, wall, window, ceiling or roof fans
제8424.89-1000호	반도체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Of a kind used solely or principally for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s
제8504.40-3010호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of heading 84.71 or of subheadings 8443.31, 8443.32, 8528.42, 8528.52 or 8528.62, and telecommunication apparatus
제8805.10-1010호	군용·경찰용	For military use and police use

이와 같은 용도를 기초로 품목분류를 결정할 때, 주로 세 가지 쟁점이 발생해 왔다. 첫째, 용도의 개념이 의도된 용도(intended use)인지, 아니면 실제 용도(actual use)인지 여부이며, 둘째, ‘~용’, ‘~에 사용되는’, ‘~기기의 것’ 표현과 같이 ‘주로 사용(principal use)’ 표현이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으로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사용 가능하기만 하면 되는지’ 여부이며, 셋째, 주 용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다.

□ 쟁점 1 : 의도된 용도와 실제 용도

(1) HS 협약 및 해설서 등 규정 검토

용도에 기초한 호의 용어를 검토할 때, HS 협약(통칙, 주 규정, 호의 용어), HS 해설서, HS 품목분류 의견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우선 기계의 부분품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suitable for) 부분품’의 의미를 제84류 해설서 총설에서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designed)’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의도된 용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수송기계의 부분품 분류규정인 제17부 주 제3호에서도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으로 규정하며, 제16부 주 제2호와 마찬가지로 ‘적합한(suitable for)’이 삽입돼 있어 설계·의도된 용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HS 주(註) 규정 및 부(部) 해설서 총설상 ‘의도된 용도’ 규정 ●

규정	국문	영문
제16부 주 제2호 나목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Other parts, if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a particular kind of machine, or with a number of machines of the same heading (including a machine of heading 84.79 or 85.43) are to be classified with the machines of that kind or in heading 84.09, 84.31, 84.48, 84.66, 84.73, 85.03, 85.22, 85.29 or 85.38 as appropriate.
제84류 해설서 총설	(2) 그렇지 않으면 이 류에서는 이들 부분품들이 특정 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하여 그 기계와 같은 호에 분류하고,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면 제8548호에 분류한다.	If not, in this Chapter in the same heading as the machine for which they are intended ¹⁾ , provided they are designed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at machine; when not so designed , they fall in heading 85.48.
제17부 주 제3호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References in Chapters 86 to 88 to “parts” or “accessories” do not apply to parts or accessories which are not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articles of those Chapters.

HS 해설서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물품의 용도를 ‘의도된 용도’로 설명하고 있다.

● HS 해설서상 ‘의도된 용도’ 규정 ●

해설서	호의 용어	해설서
제7312호	포장용 빈 포대	이 호에는 수송·저장·판매용의 상품을 포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of a kind normally used for) 방직용 섬유로 만든 포대(sack·bag)를 분류한다.

1) HS 해설서 개정 필요 : ‘intended(의도된)’가 해석 생략돼 번역 추가 필요함.

해설서	호의 용어	해설서
제8512호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specialised for)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제8545호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그 모양·치수·그 밖의 점에 의하여 (recognisable by their shape, dimensions or otherwise)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포함되며,
제9032호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automatic regulator)는 전기적이나 비전기적인 양(量)의 실제 값(actual value)을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애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값(desired value)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intended for use).
제9505호	촉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 [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A) 촉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 용도면에서 (in view of their intended use) 일반적으로 비내구성 재료로 제조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또한 HS 품목분류 의견서 제8424.41/1을 보면, 압축식 분무기에 대해 “물리적 특징으로 보아 명백히 농업용 또는 원예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즉, WCO HS 위원회에서 제8424.4호(농업용 또는 원예용 방제기) 결정 시 실제 사용용도가 아닌 물리적 특징이라는 기준을 적용했다.

● HS 품목분류의견서상 ‘의도된 용도’ 규정 ●

참조번호	내용
8424.41 /1	압축식 분무기 작동 압력이 3바이고 충전용량이 5리터인 것으로, 안전밸브가 결합된 피스톤식 압력계 및 충전용 깔때기가 함께 제공된 것이다. 이 분무기에는 펌프, 황동제의 랜스(취관), 조절 가능한 운반용 끈, 깔때기가 있는 견고한 용기와 조절가능한 노즐이 있다. 이 분무기는 물리적 특징으로 봐 명백히 농업용 또는 원예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 

즉, HS 협약상 제16부 주 제2호 및 제17부 주 제3호 규정, HS 제84류 해설서 총설 등 해설서 규정, HS 품목분류 의견서를 참고하면, 관세율표상 용도는 실제 용도보다는 물품의 의도된 용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우리나라의 규정 및 판례 분석

용도에 기초한 호의 용어를 검토할 때, 우리나라의 「관세법」, 품목분류 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의해 부과하므로 수입신고하는 때 검토되는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된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 판례를 보면 수입 후 실제 사용용도가 아닌 물품의 의도된 용도대로 품목분류를 적용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 법원의 용도 관련 판례 ●

구분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 1989.5.15. 선고 85구39	일반용 분무기를 헤어스프레이와 같은 화장용 분무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으로 다른 용도에 전용돼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그 원칙적인 용도는 일반용의 분무기로 제작됐고, 그 용도, 기본구조 및 작용방식 등에 있어 화장용 분무기와 서로 다르면 이는 일반용의 분무기로 봐야 할 뿐 화장용 분무기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7도386 판결	수입 후 입욕제로 유통, 사용하더라도 품질에 기초한 일반적인 용도에 의해 품목분류를 할 경우, ‘차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대상물품이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음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대상물품이 음용에 적합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류’에 해당된다.
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 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 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추가적으로, 품목분류 결정 시 「관세법」 제83조의 용도세율 규정과 경합돼 자주 논란이 된다. 품목분류 결정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근거해 동일한 물품을 객관적 성질에 따라 하나의 세번에 품목분류 결정을 하는 것이다. 반면, 용도세율 규정은 품목분류 일반원칙에 관한 특례 조항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용도세율(「관세법」 제83조)은 간이세율(동법 제81조), 합의에 의한 세율(동법 제82조)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먼저 신청하고, 수입자의 사후 용도에 따라 해당 세율 적용이 결정되는 것이다. 즉, 이들은 일반적인 품목분류 기준에 따른 관세율표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 제81조·제82조 및 제83조 조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²⁾

2) 이종익,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에 관한 고찰(2019)>

(3) 해외의 규정, 분류사례 및 판례

미국에서는 용도를 고려한 관세율표 추가 통칙³⁾에 규정하고 있다. 미국 추가 통칙은 우리나라는 두고 있지 않지만, 품목분류 실무에 참고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추가 통칙 1(a)에서 주 용도(principal use), 1(b)에서는 실제 용도(actual use)를 다루고 있다. 용도에 의한 품목분류와 관련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추가통칙 1(a)이다.

● 미국의 관세율표 추가 통칙 ●

규정	추가통칙(Additional U.S. Rules of Interpretation)
1(a)	1. In the absence of special language or context which otherwise requires-- (a) a tariff classification controlled by use (other than actual use) is to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use in the United States at, or immediately prior to, the date of importation, of goods of that class or kind to which the imported goods belong, and the controlling use is the principal use;
1(b)	(b) a tariff classification controlled by the actual use to which the imported goods are put in the United States is satisfied only if such use is intended at the time of importation, the goods are so used and proof thereof is furnished within 3 years after the date the goods are entered;

추가 통칙 1(a)에 따르면, 용도를 고려한 품목분류는 ‘주 용도(principal use)’에 따라 결정되며, ① 해당 수입물품이 속하는 유형이나 종류(class or kind)의 물품의, ② 미국에서(in the United States), ③ 수입일이나 수입일 직전의(at, or immediately prior to, the date of importation) 용도로 품목분류한다.

추가 통칙 1(b)는 우리나라의 용도세율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미국 내 제98류와 제99류에 분류하기 위한 규정이다. 정리하면, 미국에서는 용도세율 결정을 위해 추가 통칙 1(b)를 제외하고, 용도를 고려한 품목분류 시 물품의 주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주 용도는 추가 통칙 1(b)의 실제 사용용도를 제외하고 의도된 용도로 판단된다.

한편,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제8528.51호) 여부를 결정할 때 물품의 객관적 특성으로 의도된 용도(intended use)를 검토하고 있다.⁴⁾

3) 미국의 추가통칙(Additional U.S. Rules of Interpretation)은 HS 협약은 아니지만, HS의 분류원칙 범위 내에서 미국 내에서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

4)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91/10, 27.3.2014. “Given the objectiv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such as the resolution, the supported resolutions, the aspect ratio, the pixel pitch suitable for prolonged close viewing, the brightness, the interfaces commonly used in ADP systems and the presence of tilt mechanisms, **the intended use is that of a monitor of a kind solely or principally used in an ADP system of heading 8471.**”

호주 관세청은 품목분류 기준을 안내⁵⁾하면서 제8211.91호의 식탁용 칼은 스타일, 재질 또는 구조로 봐 산업·상업적으로 음식물을 조제하거나 서빙하기 전 음식 조제를 위해 주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주방용 또는 낙농용 칼을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제8528.51호) 여부를 결정할 때, “품목분류는 수입하는 시점에 발생하며, 사용자가 그들의 시간과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추후에 예정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어떤 모니터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실제 용도와 관련되지 않고, 수입 시점의 물품의 주된 적정성과 의도된 용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⁶⁾

(4) 소결

위와 같이 같이 HS 협약 규정,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규정, 품목분류 사례 및 판례, 각종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품목분류상 용도는 최종 사용자의 실제 사용용도가 아닌 의도된 용도를 말한다.

□ 쟁점 2 : ‘주로 사용(principal use)’ 표현이 호의 용어에 없는 경우, ‘주로 사용’인지 아니면 ‘사용가능한 경우’로 해석해야 할지

호의 용어에 ‘~용(for~)’, ‘~용의 것(for~)’ 등과 같이 ‘~에 주로 사용하는지’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 주로 어떤 용도에 사용돼야 그 호에 분류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사용 가능하기만 하면 그 호에 분류한다는 것인지 종종 쟁점이 돼 왔다.

(1) HS 협약 및 해설서 등 규정 검토

HS 협약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이 하나의 호에 분류되려면, 호의

5) 호주 관세청 홈페이지 분류기준 안내 자료. “This classification does not include kitchen or dairy knives that are of a style, materials or construction that show they are **primarily intended for use in either the industrial or commercial preparation of foods or for the preparation of food prior to serving.**”

6) 2017.2.17. DECISION AND REASONS. Appeal No. AP-2014-041. Tri-Ed Ltd. v. President of the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발췌

“Finally, for similar reasons, the Tribunal notes and agrees with the CBSA’s insistence that “classification happens at the time of importation” and that classification is “not about what a user [of a good] is eventually going to do with it as their time and budget allows.” The Tribunal reiterates that the test of whether monitors are “of a kind … principally used in” ADP systems of heading 84.71 does not relate to the actual use that a user makes of a good, but rather requires looking at the principal suitability and intended use of the good, as they exist at the time of importation”

용어에 ‘~에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 없더라도 주로 사용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로 사용되는 경우를 판단할 수 있을 때, 통칙 제1호를 적용해 주 용도를 결정할 수 있고, 아니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또는 제3호 가목에 따라 특정한 용도를 결정하는데, 이때도 결정을 못 할 경우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하는데, 본질적인 특성은 ‘주로(principally, chiefly) 사용되는 용도’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HS 해설서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원피, 가죽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로 원피, 가죽용으로 설계돼야만 제8453호의 원피, 가죽용 가공기계로 본다는 것이다.

● ‘~용’을 ‘주로 사용’으로 설명한 해설서 내용 ●

호	호의 용어	HS 해설서(발췌)
제8201호	낫·초절기(草切機)·오톨리 전단기(剪斷機)·제재(製材)용 썰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	이 호에는 주로 농업용·원예용이나 임업용에 사용하는 수공구(hand tool)를 분류하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예 : 도로작업·토목공사·광업·석공·목공이나 가정용의 도구)도 이 호에 포함한다.
제8453호	원피나 가죽의 유평(柔皮)준비기·유평(柔皮)기·가공기계, 원피·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그 밖의 물품의 제조용·수선용 기계(재봉기는 제외한다)	그레이닝(graining)·절단·천공·세천공(細穿孔 : pricking)기와 같은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어떤 것은 장화와 구두제조용 기계일지라도 가죽 이외의 재료[예 : 판지·모조가죽(imitation leather)이나 플라스틱]에도 사용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기계가 주로 원피·가죽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2) 우리나라의 분류 사례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제8504.40-3010호의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과 제8414.51호의 ‘테이블용, 바닥용’ 결정 시, 어떤 용도에 사용가능 여부가 아니라 어떤 용도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로 품목번호를 결정했다.

●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로 용도를 판단한 사례 ●

참조번호(날짜)	품목분류위원회 분류 사례(발췌)
품목분류3과-3907 (2017.7.24.)	○ Travel adaptor 본건 물품이 HSK 8504.40-3010호 ‘… 전기통신용 기기의 배터리 충전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본건 물품은 휴대 단말기의 충전단자인 Micro-USB 타입의 배터리 충전기로서 휴대폰 외 MP3, 디지털카메라, 무선스피커 등에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 배터리 충전기로 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4.40-3090호에 분류함.

참조번호(날짜)	품목분류위원회 분류 사례(발체)
품목분류4과-4977 (2022.7.18.)	○ 애플아이 휴대용 선풍기 본건 물품이 소호 제8414.51호의 ‘테이블용·바닥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본건 물품은 실내외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하기 위한 ‘휴대용 선풍기’로, 디자인 측면에서 ‘휴대성’이 좋도록 사이즈가 작고 가벼우며, 손으로 잡고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거치대)가 있고, 구성 측면에서도 목에 걸어 휴대할 수 있는 ‘넥 스트랩(neck strap)’이 소매포장에 함께 구성돼 있으며, 품명과 카달로그 등에서도 본건 물품을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선풍기’로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물품은 ‘테이블용·바닥용 팬’으로 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음.

(3) 해외의 규정, 분류 사례 및 판례

미국의 추가통칙 1(a)에서, 용도를 기초로 한 품목분류 시 ‘주 용도(principal use)’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면서, ① 해당 수입물품이 속하는 유형이나 종류(class or kind)의 물품의, ② 미국에서(in the United States), ③ 수입일이나 수입일 직전의(at, or immediately prior to, the date of importation) 용도로 품목분류한다. 즉, 미국은 용도에 기초한 품목분류를 할 경우, 추가통칙에 따라 ‘주로 사용’ 같은 표현이 없더라도 주 용도를 검토해 품목분류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주로 사용’ 표현이 호의 용어에 없는 경우에도 용도에 기초한 품목분류 시 어떤 용도로 사용 가능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용돼야 그 호에 분류된다.

□ 쟁점 3 : ‘주 용도(principal use)’의 기준

(1) HS 협약상 ‘주로 사용’의 기준

제84류 주 제8호 및 제84류 해설서 총설에서 “하나의 물품이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해 다용도 기계의 경우 여러 가지 용도 중 주된 용도로 분류한다.

다용도 부분품의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다목과 관련한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품을 설명하면서, 특정한 기계나 특정한 종류의 기계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품을 ‘서로 다른 호에 분류하는 다수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서로 다른 호의 다수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 관세율표 관련 규정 발췌 ●

규정	내용
제16부 해설서 총설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부분품으로는 인정된다 할지라도 특정한 기계나 특정한 종류의 기계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품(즉, 서로 다른 호에 분류하는 다수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의 규정에 따라 제외하지 않는 한 제8487호(비전 기식)나 제8548호(전기식)의 것에 분류한다.
제84류 주 제8호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서는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제84류 해설서 총설	제8401호에서 제8424호까지의 호 이외의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계류는 가장 구체적으로 열거한 호나 해당 기계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여러 종류의 다른 목적이나 산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다목적 기계[예 : 종이·방직용 섬유·가죽·플라스틱 등의 산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아이레팅기(eyeletting machine)]는 제8479호로 분류한다.

(2) 우리나라의 분류 사례 및 판례

우리나라에서는 ‘주 용도’의 기준에 대해 법령 등에서 규정하지 않았지만, 품목분류 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례 중 ‘LCD Module indicator’의 경우, 크기, 해상도 등 물리적 특성으로, ‘AMOLED Module’의 경우 터치기능, 고해상도 등 물리적 특성으로,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 물품 디자인 등 물리적 특성, 구성, 판매, 품명 측면으로, ‘Dicing sawing machine’의 경우 다양한 용도, 부속품 측면으로 주 용도를 판단했다. 이때 카달로그, 사양서 등 제조자가 작성한 객관적인 자료가 검토됐다.

● 품목분류 결정 사례 中 주 용도의 분류 기준 ●

참조번호(날짜)	품목분류 근거(발췌)	○ 주용도 기준 ○ 확인 자료
품목분류3과-3907 (2017.7.24.) 	○ Travel adapter 본건 물품이 HSK 8504.40-3010호 ‘… 전기통신용 기기의 배터리 충전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본건 물품은 휴대 단말기의 충전단자인 Micro-USB 타입의 배터리 충전기로서 휴대폰 외 MP3, 디지털카메라, 무선스피커 등에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 배터리 충전기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4.40-3090호에 분류함.	○ 다용도 사용 ○ -
품목분류3과-5827 (2018.10.25.)	○ LCD module indicator 본건 물품은 제품 사양서에 의하면 특정 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블랙박스, 출입통제 단	○ 물리적 특성 (크기, 해상도 등), 다용도 사용

참조번호(날짜)	품목분류 근거(발체)	○ 주용도 기준 ○ 확인 자료
	말기 등에 호환 사용이 가능 하고, 크기, 해상도 등을 볼 때 다양한 기기에 사용 가능한 물품으로, 본건 물품 상태 만으로는 완제품을 특정할 수 없으나, 영상 표시장치로서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이라 할 수 있음.	○ 사양서
품목분류3과-5723 (2022.10.1.) 	○ AMOLED Module For Head Mount Display(HMD) 본건 물품은 영상 표시기능을 수행하는 OLED 모듈로서, 유사한 3.5인치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OLED 모듈과는 달리 별도의 터치 기능 이 없고, 화면이 눈앞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고해상도 (1,440×1,600)로 돼 있으며, 듀얼 형태이기 때문에 직사각형(16:9)이 아닌 정사각형 (10:9)의 화면비율을 갖고 있으며, 특히 화주 설명에 따르면 제8528.52호에 분류되는 완제품(HMD)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됐음.	○ 물리적 특성 (터치기능, 고해상도, 정사각형) ○ 화주설명
품목분류4과-4977 (2022.7.18.) 	○ 엠아이 휴대용 선풍기 본건 물품은 실내외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하기 위한 ‘휴대용 선풍기’로, 디자인 측면에서 ‘휴대성’이 좋도록 사이즈 가 작고 가벼우며, 손으로 잡고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거치대)가 있고, 구성 측면에서도 목에 걸어 휴대할 수 있는 ‘넥 스트랩(neck strap)’이 소매포장에 함께 구성돼 있으며, 품명과 카달로그 등에서도 본건 물품을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선풍기’로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물품은 ‘테이블용·바닥용 팬’으로 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음.	○ 물리적 특성 (디자인, 사이즈), 구성, 판매, 품명 ○ 카달로그 등
품목분류4과-4976 (2022.7.18.) 	○ Dicing sawing machine 본건 물품에 대한 카달로그와 사양서 에 의하면, 반도체 웨이퍼 외에 유리나 세라믹 등의 경질 재료, 광학부품, 자기헤드 등 다양한 재료와 대상물을 ‘ 다양한 공정 (예 : 웨이퍼 절단, 개별 칩 절단, 패키지 절단 등)’에서 절단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이며, 블레이드를 교환 하면 반도체 디바이스 외에도 유리, 세라믹 등 다양한 재료를 가공할 수 있으므로 반도체 제조 또는 조립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기로 볼 수 없음.	○ 다용도 사용, 부속품 ○ 카달로그, 사양서

또한 판례와 관련해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관세를 부과하므로 ① 물품의 구조나 기능, ② 용도전환이 용이한지 여부로 ‘주 용도’를 결정할 대법원 판례가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8528.69호 기타의 프로젝터 결정 시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외에 DVD 플레이어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외부화면에 확대 투영하는데 필요한 구조 및 기능과 쉽게 용도를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제8528.61호)’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제8528.69호의 기타의 프로젝터로 분류한 바 있다.

(3) 미국의 주 용도의 기준

추가 통칙 1 (a)에 따르면, 특정한 물품의 주 용도를 검토함에 있어 미국의 카보런덤 요소⁸⁾ (Carborundum factors)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카보런덤 요소는 미국 관세청과 카보런덤사 간 페로실리콘 합금 품목분류 분쟁 시 법원에서 고려했던 여러 가지 용도 중 주 용도의 결정 요소들을 말한다.

● 미국 관세청과 카보런덤사 간 판결 내용 ●

구분	판결 내용
536 F. 2d 373 The United States v. The Carborundum Company (No. 75-26 C.A.D. 1172) - United States 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 June 17, 1976	수입 페로실리콘합금이 철 금속 제조에서 원재료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이나 종류와 같은 것(same class or kind as that commonly used as raw material in the manufacture of ferrous metals)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적절한 환경을 검토해야 한다. Star-Kist Foods, Inc. v. United States, 45 CCPA 16, C.A.D. 666, 275 F. 2d 472 (1957). 수입물품이 특정한 유형이나 종류(particular class or kind)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법원이 고려했던 요소들은 그 물품의 일반적인 물리적 특성, 최종 소비자의 기대, 그 물품이 이동하는 거래의 채널·유형·종류 , Maher-App & Co., supra at 37, 418 F. 2d at 926 (Baldwin, J., concurring), 판매 환경(부속품 동반, 광고와 전시방법), United States v. Baltimore & Ohio R.R., 47 CCPA 1, C.A.D. 719 (1959)), 혹시 있다면 유형과 종류를 규정하는 상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되는지, 수입 물품을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의 경제적 실용성, 당해 용도로의 거래에 대한 인식 . Bob Stone Cordage Co. v. United States, 51 CCPA 60, C.A.D. 838 (1964) ... <중략> ... 이전 건물에서 사용된 많은 적절한 요소들은 여기 있으며, 수입물품은 철 금속 제조 시 원재료로 통상적으로 사용된 유형이나 종류의 것이 아님을 모든 요소들이 보여준다. 기록을 보면 쟁점 수입 페로실리콘은 제조가 아닌 채굴작업으로 특징지어지는 중액선광에서만 사용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최종구매자는 철 금속 제조시 사용되는 원재료 구매자와 같지 않다. 각자는 쟁점물품에 대해 구매 시 서로 다른 기대와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고, 서로 다른 거래 채널에 있다. 더구나 수입물품을 철 금속 제조 시 사용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실용적이지 않다 ... <이하 생략>

8) United States v. The Carborundum Company, 63 CCPA 98, 536 F.2d 373 (1976) (Carborundum)

카보런덤 요소는 ① 물품의 일반적인 물리적 특성, ② 최종 구매자의 기대, ③ 유통 방법(거래의 채널), ④ 판매 환경(부속품 동반, 광고와 전시 방법), ⑤ 관세율표 호(유형과 종류)의 물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되는지, ⑥ 수입 물품을 관세율표 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의 경제적 실용성과 관세율표 호의 용도로 거래에 대한 인식 등을 말한다.⁹⁾

카보런덤 요소를 활용하는 방법은, 특정물품의 용도와 특정물품이 분류될 수 있는 HS 호의 용도에 대해 ① ~ ⑥ 카보런덤 요소로 비교해 가장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는 우세한 품목번호로 분류하는 것이다.

(4) 기타 국가의 주용도 기준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에서는 주 용도(principally used)의 기준으로 제17부 해설서를 참조, 어떤 부분품이 다른 용도를 갖고 있어도 상위모체와 가장 많이 사용된다면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생각하며, 어떤 부분품이 설계(design)나 성질(nature)로 봐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모체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고 생각한다.¹⁰⁾

(5) 소결

HS 규정상 하나의 용도가 다른 용도들보다 우세한 경우 주로 사용으로 볼 수 있고, 다른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된다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판례를 보면, 수입신고 시점에서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도록 필요한 구조 및 기능을 갖추고 있고, 쉽게 용도를 전환해 사용하지 못하는 특성을 ‘주 용도’로 볼 수 있다. 또한 분류 사례에서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 부속품, 판매환경 등 요소로 주 용도를 결정했다. 미국의 경우 주 용도는 카보런덤 요소 6가지 기준으로 결정했다.

9) 북캘리포니아 관세사·운송주선인 협회의 교육자료(당신이 알아야 할 HS 품목분류), Turtle law office, 2016.12.14.

- What are the general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articles?
- What are the expectation of the ultimate purchaser?
- How are the article distributed (Channels of trade)?
- What is the environment of sale (accompanying accessories, manner of advertisement and display)?
- Use in the same manner as merchandise which defines the class
- Economic practicality of so using the import, and recognition in the trade of this use.

10) DECISION OF THE TRIBUNAL. Appeal No. AP-93-035. GARLOCK OF CANADA LTD. V. THE DEPUTY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FOR CUSTOMS AND EXCISE. 1994.5.3.

“In understanding what is meant by the term ‘principally used,’ the Tribunal was guided by the 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to Section XVII. The Tribunal believes that a part is used “principally” with a parent article if it is used most commonly or abundantly with that article, though it may have other uses. A part is used solely with a parent article if it is dedicated by design or nature to a single purpose.”

위와 같이 HS 규정,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규정, 분류 사례 등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주 용도 판단 시 크게 봐 물품의 물리적 특성, 유통·판매 특성, 비교·분석 특성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총 9개의 세부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 HS 품목분류상 주 용도의 판단 기준 ●

주요 기준	세부 기준	비고
물품의 물리적 특성	물품의 구조·설계	대법원, HS 품목분류 의견서, 품목분류 위원회, 카보런덤 요소
	물품의 기능·사양	대법원, 카보런덤 요소
	다용도 사용(물품의 용도전환 용이성)	HS 통칙, 대법원
유통·판매 특성	최종 소비자의 기대	카보런덤 요소
	거래 채널	카보런덤 요소
	부속품 동반, 광고·전시 방법	품목분류위원회, 카보런덤 요소
비교·분석	제시물품이 호의 용어대로 사용되는지	카보런덤 요소
	제시물품을 호의 용어대로 사용 시 경제적 실용성	카보런덤 요소
	제시물품을 호의 용어대로 사용 시 거래의 인식	카보런덤 요소

Ⅲ. 진공펌프의 품목분류 기준 설정

□ 진공펌프의 개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정에서는 건식진공펌프¹¹⁾, 터보분자펌프, 크라이오펌프 등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 중 건식진공펌프 시장이 약 7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식진공펌프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저진공 공정 환경에서의 사용뿐만 아니라 고진공의 공정환경이 필요하며 고진공펌프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의 정상작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진공펌프 뒷단을 중진공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저진공펌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¹²⁾

건식 진공펌프는 주로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FPD), LED 및 태양 전지 제조에 많이 사용되며, 많은 공정이 10^{-3} Torr ~ 10^{-6} Torr의 진공 영역에서 건식 진공펌프 단독 혹은 건식 진공펌프와 터보 분자 펌프가 조합돼 해당 진공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요구하는 진공도는 고진공이 필요한 이온 주입, 물리 기상 증착(PVD), 극자외선

11) 건식진공펌프는 진공펌프에 의해 배기되는 기체(증기)가 진공펌프 내부를 지나가는 경로에 유체가 없다는 것이다. 건식진공펌프는 회전자의 모양에 따라 Screw, Roots, Roots와 Claw 조합된 것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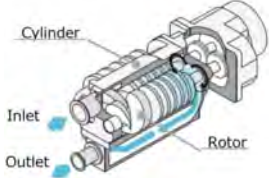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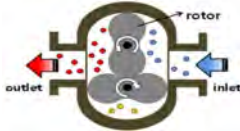
12)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급 건식진공펌프 개발 개요’, <한국진공학회지> 제19권 제4호(2010.7.). p265~274, 이상윤·노명근·김병욱·이안성

리소그래피(EUV) 공정에서 주로 $10^{-6} \sim 10^{-8}$ Torr이며, 동역학/운동량 전달 방식의 터보 분자 펌프나 크라이오 펌프 등과 함께 건식 진공펌프가 조합돼 사용된다.¹³⁾

반도체 및 최근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경우 전체의 40~50% 공정이 진공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판 위에 동일한 기능을 갖는 막을 형성할 경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채용하는 소재와 공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는 공정 중 장비에 주입하는 전구체¹⁴⁾의 양과 필요로 하는 진공펌프의 배기량¹⁵⁾이 반도체 공정 대비 증가하는 점이 두드러진다.¹⁶⁾

반도체 전체 제조공정의 60% 정도는 각각 특별한 진공도를 응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식각(metal, oxide, polysilicon), 화학기상증착(CVD), 이온주입(Ion implantation), 스퍼터링(sputtering)과 레지스트 식각(resist etching)을 들 수 있다. 각 응용공정은 목적에 따라 진공요구도, 배기속도, 가스당 부분진공도, 처리해야 되는 반응물, 진공용기의 크기 등에 따라 개별적이고 특수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진공펌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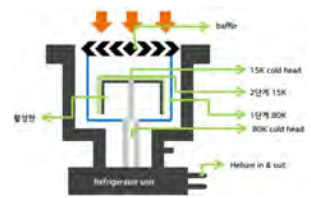
구분	작동원리	이미지
스크루펌프	케이스 내부에서 스크루와 스크루, 스크루와 케이스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서로 조화되는 단수의 곡선을 유지해 부드럽게 회전하는 특징의 여러 개의 커브(curve)를 이용한 두 개의 스크루를 사용해 흡입 기체를 압력 하에 밀어냄.	
루츠펌프	두 개의 회전자(rotor)가 동시에 반대로 회전하면서 '흡입-압축-배기'의 과정이 동시에 이뤄짐.	
터보분자 펌프	기체분자가 흡기구를 통해 디스크 사이로 유입되면, 디스크에 장착된 블레이드에 충돌하게 되고 블레이드의 각도에 의해 방향이 꺾이면서 운동량을 전달받아 다음 디스크 쪽으로 이동함. 이렇게 이동된 기체 분자는 또 다른 블레이드와 다시 충돌하게 돼 순차적으로 배기구 쪽으로 이동하게 됨.	

13) 기술기고 : 우리생활에 밀접한 진공펌프. 산업일보. 에드워드코리아. 2021.6.22.

14) 화학 반응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전구 물질, 선구 물질이라고도 하며, 반응물(Reactant)과 비슷한 개념이다(출처 : 나무위키).

15) 진공펌프가 어느 정도의 도입 또는 발생하는 가스 유량을 처리하는지의 양

16)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을 위한 진공배기시스템', <진공이야기(vacuum magazine)>, 노명근, 2014.12.

구분	작동원리	이미지
크라이오 펌프	펌프 내부에 극저온 영역을 만들고, 그곳에 기체를 응축시켜 제거하는 방법으로 진공을 만들어 냄.	

□ 진공펌프의 품목분류 기준

진공펌프가 제8414.10-9010호 또는 제8414.10-9020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4가지 요건, ‘①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② 제조에(for the manufacture of), ③ 전용되거나(used solely) 주로 사용되는(used principally), ④ 종류의 것(of a kind)’을 충족해야 한다.

● 진공펌프의 HSK 국·영문 호의 용어 ●

HSK	호의 용어
제8414.10-9010호	반도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Of a kind used solely or principally for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s
제8414.10-9020호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Of a kind used solely or principally for making flat panel displays
제8414.10-9090호	기타 Other

즉 ① ~ ④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반도체 제조용인 경우 제8414.10-9010호로 분류하고,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인 경우 제8414.10-9020호에 분류하고, ① ~ ④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제8414.10-9090호에 분류한다.

● 진공펌프 분류 기준 ●

검토 사항(요건)	분류 기준
①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② 제조에(for the manufacture of) ③ 전용되거나(used solely) 주로 사용되는(or principally) ④ 종류의 것(of a kind)	○ ① ~ ④ 요건 충족하는 경우 ⇒ 반도체 제조용은 제8414.10-9010호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은 제8414.10-9020호 ○ ① ~ ④ 요건 미충족하는 경우 ⇒ 기타 용도는 제8414.10-9090호

(1) 요건 ① :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기타에 해당하는가?

○ 반도체

관세율표상 반도체는 제8541호와 제8542호에 분류되는 특정물품을 말한다. 제8541호에 분류

되는 반도체는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LED)가 포함된다.¹⁷⁾ 제8542호에 분류되는 반도체는 모노리식 집적회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가 포함된다.

● 관세율표상 반도체 관련 물품 이미지 ●

구분	이미지					
반도체 예시						
	트랜지스터	트랜스듀서	태양광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LED)	집적회로(IC)	
반도체가 아닌 물품						
	수정진동자	인덕터	커패시터	저항기	인쇄회로기판	터치패널

이때 중요한 점은 재질 세번 또는 제8541호의 수정진동자, 수동소자(제8504호의 인덕터, 제8532호의 커패시터, 제8533호의 저항기), 제8534호의 인쇄회로기판(PCB), 제8537호 또는 전용부분품호의 터치패널 등은 품목분류상 반도체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을 제조하기 위한 진공펌프는 제8414.10-9090호(기타)로 분류돼야 한다.

해당 취지로 2022년 제6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본건 물품의 실제 용도는 제85류 주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반도체디바이스’가 아닌 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의 ‘수정 진동자’를 절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8486호¹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¹⁹⁾

○ 평판디스플레이

관세율표 제8524호 해설서에 따르면, 평판디스플레이는 액정디스플레이(LC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발광다이오드(LED), 그 밖의 디스플레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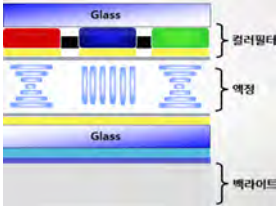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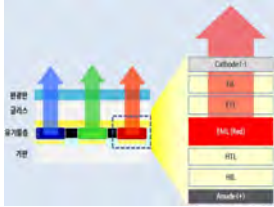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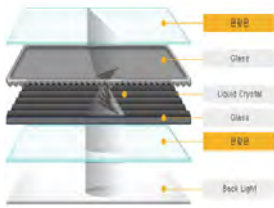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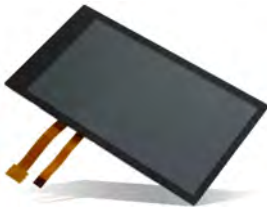
17)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1호 가목 : 제85류의 주 제12호 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와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를 포함한다.

18) 제8486호의 용어 :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19) 품목분류사전심사 품목분류4과-4976(2022.7.18.)

재질 세번 또는 전용 부분품 세번의 커버 글라스, 재질 세번 또는 제9001호의 광학시트, 제8537호 또는 전용 부분품 세번의 터치패널 등은 품목분류상 평판디스플레이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들을 제조하기 위한 진공펌프는 제8414.10-9090호(기타)로 분류돼야 한다.

● 관세율표상 평판디스플레이 관련 물품 이미지 ●

구분	이미지		
평판 디스플레이 예시	 액정디스플레이(LC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발광다이오드(LED)
평판 디스플레이가 아닌 물품	 커버 글라스	 편광판 등 광학시트	 터치패널

○ 기타

이상과 같이 제8414.10-9090호(기타)에는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가 아닌 수동소자(인덕터, 커패시터, 저항기), 인쇄회로기판(PCB), 터치패널, 광학제품, 자동차 부품, 또는 다용도로 사용하는 진공펌프가 분류된다. 또한,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와 기타 산업설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해 주 용도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최종호인 제8414.10-9090호(기타)에 분류할 수 있다.

(2) 요건 ② : 제조에 사용되는가?

제8414.10-9010호와 제8414.10-9020호에 분류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쟁점물품이 ‘제조(manufacture)’에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제조’가 아닌 ‘측정, 검사 등’에 사용되는 물품은 제8414.10-9090호에 분류된다.

‘제조’의 범주에 대해서는 제8486호 해설서에 설명이 돼 있다. 반도체 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 제조는 제8486호 해설서에서 ‘막형성 장비(예 : 화학기상증착기, 물리기상증착기), 도핑장비(예 : 열확산장비, 이온주입기), 식각장비(예 : 건식 및 습식 식각기), 석판인쇄장비(예 : 노광기), 현상장비 등’의 작업을 말하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도 반도체 공정과 유사한 공정을 수행한다.

(3) 요건 ③ : 주 용도의 기준

○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VS 기타의 진공펌프 간 주 용도 기준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과 기타의 진공펌프 간 차이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물품의 물리적 특성(도달진공도, 코팅 여부), 유통·판매 특성(인증 취득 여부, 제시형태) 등에서 차이가 난다.

도달진공도와 관련해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공정에서는 통상적으로 10^{-3} Torr $\sim 10^{-8}$ Torr 수준 또는 이상의 중진공 또는 고진공에서 사용된다. 이와는 달리 저진공도는 진공흡착이송, 인쇄기 자동급지, 분말충진, 진공성형, 진공포장, 진공건조, 탈기장치, 진공증류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며, 초고진공 상태의 진공도는 원자핵 연구장치, 전자현미경 플라즈마 발생기, 물리실험장치 등에 사용된다.

부식 및 오염 방지장치로서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공정에서는 다양한 화학약품, 가스 등을 사용하므로 진공펌프 내부 부품에 니켈, 산화막 코팅 등을 해서 부식 및 오염방지를 하기도 한다. 각종 인증과 관련해 반도체용과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은 용도에 맞게 SEMI 인증²⁰⁾을 받기도 한다.

제시형태 관련해서는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공정에서 통상적으로 건식진공펌프 단독 또는 건식진공펌프와 터보분자펌프 또는 크라이오펌프가 조합돼 제시된다. 또한 기타 유통·판매 특성 관련해 최종 소비자의 기대, 거래채널, 광고·전시방법 등에서 반도체용·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과 기타 산업용 진공펌프는 차이가 난다.

또한 비교·분석기준으로서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진공펌프를 타 산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아니면 반대로 타 산업용 진공펌프를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 사용할 경우 경제적 실용성, 거래의 인식 등 측면상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 분류기준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 반도체용 VS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진공펌프 간 주 용도 기준

반도체 제조용과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은 물리적 특성(펌프 용량, 코팅 여부 등), 유통·판매 특성, 비교·분석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펌프 용량은 기본적으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의 챔버(chamber, 작업공간)가 반도체 제

20) SEMI(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ternational) 인증 : 세계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장비 및 재료에 대한 포괄적인 국제표준규격

조장비의 챔버보다 더 크므로 평판디스플레이용 펌프용량이 통상 더 크다. 굳이 나누고자 하면 4,000L/s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평판디스플레이용, 미만이면 반도체용으로 나눌 수 있겠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평판디스플레이용 펌프 용량 1개는 반도체용보다 더 크지만, 더 작은 용량의 펌프를 여러 개 사용할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각 펌프의 용량이 더 작아질 수 있다.

또한 반도체 제조장비 보다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의 챔버가 보통 더 커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시 화학약품, 가스 등을 더 많이 사용되므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의 경우, 회전자 등 내부 부품의 부식 및 오염방지를 위해 산화막과 니켈 등으로 코팅처리를 더 많이 한 경우가 있다.

유통·판매 특성과 관련해 최종 소비자의 기대를 검토할 때, 카달로그, 매뉴얼, 사양서 등 자료로 용도를 확인하고, SEMI 인증과 같은 업계 인증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거래 채널 검토 시에는 관련 대리점, 도소매업자 등 업계를 통해서 유통, 판매되는지 확인하고, 제시형태가 건식진공펌프 또는 건식진공펌프와 터보분자펌프의 조합된 경우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진공펌프인 경우가 많다.

또한 비교·분석 기준과 관련해 반도체 제조용 진공펌프를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 사용할 경우, 아니면 반대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진공펌프를 반도체 제조용으로 사용할 경우 경제적 실용성, 거래의 인식 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진공펌프의 주 용도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물론 국내 품목분류 결정기관에서는 주로 제품의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므로 물품의 구조·설계, 기능, 사양 등으로 품목분류해야 할 것이며, 미국은 추가적으로 유통·판매 특성과 비교분석 기준을 검토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 진공펌프에 대한 주 용도의 기준 ●

주요 기준	판단 요소	주 용도의 판단 기준			
		세부 판단요소	반도체 제조용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타
물품의 물리적 특성	물품의 구조·설계	펌프 용량	통상 작음 (예 : 4,000L/s 미만)	통상 큼 (예 : 4,000L/s 이상)	다양함
		내부부품 코팅	회전자 등 코팅처리 상대적 적게 함	회전자 등 코팅처리 상대적 많이 함	다양함
	물품의 기능·사양	도달 진공도 (토르, Torr)	통상 $10^{-3} \sim 10^{-8}$ (2017년 이전 HSK : 9×10^{-3} 미만 제외)	통상 $10^{-3} \sim 10^{-8}$	다양함

주요 기준	판단 요소	주 용도의 판단 기준			
		세부 판단요소	반도체 제조용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타
	용도의 전환 용이성	용도 전환 용이성 (다용도)	용이하지 않음(주로 반도체용)	용이하지 않음(주로 평판디스플레이용)	용이하거나(다용도) 용이하지 않음(기타 물품 제조용)
유통·판매 특성	최종 소비자의 기대	최종 소비자의 기대	반도체 제조 - 카달로그, 매뉴얼, 사양서 등에서 확인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 카달로그, 매뉴얼, 사양서 등에서 확인	기타 물품 제조 및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등 측정 등 - 카달로그, 매뉴얼, 사양서 등에서 용도
		관련 인증	SEMI 반도체 인증	SEMI 평판디스플레이 인증	SEMI 미인증
	거래 채널	대리점, 도소매 등 통한 판매	반도체 관련 대리점, 도소매업체 등	평판디스플레이 관련 대리점, 도소매업체 등	기타 산업 제조 또는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측정검사 관련 대리점, 도소매업체 등
	부속품 동반, 광고·전시 방법	부속품 동반 (제시형태)	통상적으로 건식 또는 건식+터보분자(크라이오) 펌프	통상적으로 건식 또는 건식+터보분자(크라이오) 펌프	다양함
		광고·전시방법	반도체 제조로 홍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홍보	기타 물품 제조 또는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측정검사 홍보
비교·분석	제시물품이 호의 용어대로 사용되는지	실제 용도	대부분 반도체 제조 용으로 사용	대부분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 사용	대부분 기타 물품 제조 또는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측정검사용으로 사용
	제시물품을 호의 용어대로 사용 시 경제적 실용성	경제적 실용성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경제적 실용성이 없으나 반도체 제조 용으로 사용 시 경제적 실용성 있음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경제적 실용성이 없으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 사용 시 경제적 실용성 있음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경제적 실용성이 없으나 기타 물품 제조용 또는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측정검사용으로 사용 시 경제적 실용성 있음
	제시물품을 호의 용어대로 사용 시 거래의 인식	거래의 인식	반도체 제조용으로 사용 시 거래인식 적정함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용으로 사용 시 거래 인식 적정함	기타 물품 제조용 또는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측정검사용으로 사용 시 거래인식 적정함

(4) 요건 ④ : ‘사용하는 종류의 것’의 해석

④ 요건은 ‘사용하는 종류의 것(of a kind used for)’으로서, 실제 용도가 아닌 의도된 용도를 나타낸다. 즉, 진공펌프를 HS 품목분류할 때, 수입자의 사후 사용 용도가 아닌 수입 당시의 의도된 용도대로 품목분류해야 한다.

IV. 결론

2022년 제6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물리적 특성 등을 참고해 진공펌프의 품목분류를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진공펌프에 대한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발췌 ●

참조번호	결정사항	결정사유
품목분류4과-4994 (2022.7.19.) 	○ Vacuum Pump(Turbo molecular Pump - Ni Plating) 본건 물품은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서 반도체 제조용 터보분자펌프로 인증을 취득한 점, 반도체 제조장비 사양에 맞게 ‘회전자 니켈 코팅 처리’와 ‘TMS’를 장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본건 물품은 ‘반도체 제조용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진공펌프’로 분류함이 타당함.	○ SEMI 인증, 물리적 특성(코팅 처리, TMS 장착 등), 사양
품목분류4과-4995 (2022.7.19.) 	○ Vacuum Pump(Turbo molecular Pump - Ni Oxide Layer)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사양에 맞게 ‘회전자 니켈 코팅’ 처리와 ‘회전자 산화막 처리’, ‘니켈 코팅 메시’와 ‘TMS’를 장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본건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진공펌프’로 분류함이 타당함.	○ 물리적 특성(코팅 처리, TMS 장착 등), 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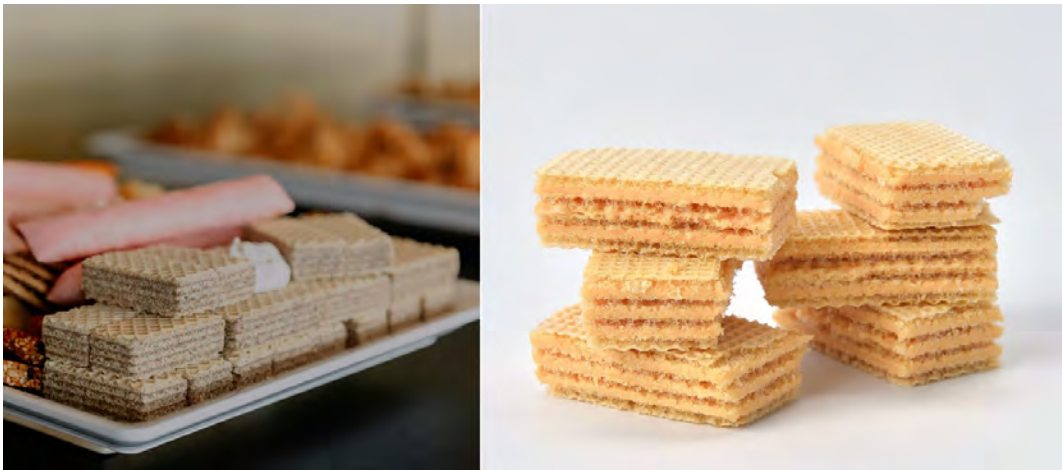
지금까지 본인 나름대로 관세율표 전반에 걸친 ‘용도’를 기초로 한 품목분류 기준을 정리했고, 정립된 기준을 관세율표 제8414호의 진공펌프에 적용해 봤다. 품목분류상 ‘용도’에 대한 개념에 대해 국내의 분류 사례, 법원 판결 등에서 조금씩 다른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본 기고를 통해 HS 사용자들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단골 논란거리인 관세율표 전반에 걸친 ‘용도’의 개념 및 주 용도의 기준에 대해 논의해 분석 결과를 고도화했으면 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웨하스’로 알려진 웨이퍼 분류 사례 -2024년도 3월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

김 홍 관 | 부산세관 분석실

1. 물품 소개



※ 위 사진은 해당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어릴적부터 먹었던 친숙한 과자 웨하스. 요즘은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부담없이 웨하스를 구입할 수 있지만, 30여년 전만 해도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던 품격 있는 과자였다.

웨하스는 본래 ‘웨이퍼(Wafers)’라는 단어가 일본을 거쳐 들어오면서 잘못 입혀진 말이다. 특유의 버터향으로 티타임을 더욱 달콤하게 도와주고 아이스크림이나 슈거파우더 등을 올려 먹기도 하는 ‘와플’도 여기서 유래했다. 잘못된 발음의 웨하스는 아이러니하게도 과자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밀가루와 우유, 달걀노른자 등을 잘 섞은 묽은 반죽을 무늬 틀에 붓고 뚜껑을 덮어 구운 것으로 기포를 다량 함유해 식감이 가볍다. 독특한 바삭거림과 달콤한 크림이 켜켜이 들어간 웨하스는 요즘 아이들도 좋아하는 과자류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곁을 지켜온 스테디셀러가 틀림없는 듯하다.

아이스크림콘의 고깔 모양 과자도 성당에서 미사 때 성찬용으로 나눠주는 동그랗고 납작한 흰색의 것도 웨이퍼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식 명칭인 웨하스가 통용되고 보통 웨이퍼라고 하면 반도체 재료인 원형의 판을 가리킨다.

얇은 원형 판으로 가공해 사용하는 것이 과자 ‘웨이퍼’ 모양과 흡사해 같은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웨이퍼를 먹는다고 하면 과자보다는 반도체를 씹어 먹는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인지도 모르겠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달콤하고 맛있는 과자인 웨하스, 관세율표 용어로는 ‘웨이퍼’의 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분류 사례

○ 개요

- Wheat flour, Sugar, Sweetened condensed skim milk 등으로 만든 원형의 얇은 웨이퍼 사이에 Vanilla seed 등으로 조제한 바닐라 크림을 충전해 수지제 봉지에 날개포장한 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85g)
- 용도 : 식용

○ 결정 세번 및 분류 이유

- 결정 세번 : 제1905.32-0000호
- 분류 이유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5.32호에는 ‘와플과 웨이퍼’를 세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9) 와플과 웨이퍼(wafer) : 이것은 본을 떠서 만든 금속판들 사이에서 구워서 만든 딱딱하지 않은 고급 베이커리제품이다. 또한 이러한 것의 범주에는 얇은 와플제품(롤 모양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둘 이상의 층이나 얇은 와플 페이스트리 사이에 맛좋은 충전제를 채운 것으로 구성된 와플과 특수한 기계[예 : 아이스크림 코오넷(ice cream comet)]을 통해서 와플반죽을 밀어내서 만든 제품을 포함한다. 또한 와플은 초콜릿으로 덮여 있기도 하다. 웨이퍼(wafer)는 와플과 유사한 제품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해 구운 원형의 웨이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32-0000호에 분류했다.

3. 품목분류 적용 길라잡이

부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 <후략>
류	(제19류) 곡물·고운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호	(제1905호)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 없다) … <후략>
HSK	(소호 제1905.3호) 스위트 비스킷, 와플, 웨이퍼 (소호 제1905.31호) 스위트 비스킷 (소호 제1905.32호) 와플과 웨이퍼

4.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1905.32-0000호
품명	Wafers; ROANNE VANILLA

○ 개요

- Wheat flour, Sugar, Sweetened condensed skim milk 등으로 만든 원형의 얇은 웨이퍼 사이에 Vanilla seed 등으로 조제한 바닐라 크림을 충전해 수지제 봉지에 날개포장한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85g)
- 용도 : 식용

○ 물품 이미지

물품설명



베드 린넨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매트리스는 침대용의 두꺼운 매트를 의미한다. 좌식 생활을 하던 옛날에는 바닥에 ‘요’를 깔고 생활했지만 입식 문화인 요즘은 ‘요’보다는 침대가 익숙해 매트리스를 구매해 침대 위에 올려 놓고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매트리스의 어원은 아랍어로 바닥에 까는 요나 방석을 뜻하는 ‘마트라흐’다. 중세 시기에는 짚을 넣은 형태가 널리 쓰였고, 귀족들은 깃털이나 말총을 넣은 매트리스를 썼다. 대항해 시대 이후로는 코코넛 섬유나 목화솜으로 채워넣은 매트리스가 등장하기도 했다. 우리가 익히 쓰는 스프링 매트리스는 19세기 중반부터 등장했고, 1920년대부터 서양권에서 널리 사용되며 주류가 됐다.

오늘날에는 본넬 스프링 및 포켓 스프링 방식의 매트리스부터 메모리폼 매트리스, 라텍스 매트리스 등 내장재와 구조가 다양한 매트리스가 나오고 있다. 매트리스는 세척이 어려워 대부분 매트리스 커버를 씌워 생활한다. 이번 호에서는 매트리스 커버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가 있어 알아보고자 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청색계 시트커버 형상의 것으로서 가장자리를 밴딩처리한 것으로 제6307.90-9000호로 신고했다.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고, 소호 제6302.32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그 밖의 베드린넨’이 세분류된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이나 아마로 만든 것 또한 대마·라미(ramie)·인조섬유로 만든 것도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세탁이 용이한 종류의 것들이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해설서 (1) 베드린넨(bed linen)에서는 “예를 들면, 침대시트·베갯잇·덧베갯잇·솜이불잇·매트리스 커버”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6302호에는 직물 두 장 사이에 충전재를 넣고 열접착해 누빈 효과를 낸 ‘누빔 원단’ 형태의 매트리스 커버도 포함한다.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로 만든 그 밖의 베드린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6302.32-0000호에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OTHER MADE UP ARTICLES	6307.90-9000 (FCN1 0%)	Other made up article of textile materials	6302.32-0000 (FCN1 0%)

‘안티에이징’ 화장품 판매 제한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관세사)

안티에이징(anti-aging)이란 인체의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멈추어서 현상유지하거나, 혹은 역전시켜 젊은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의과학이 발달하면서 실제로 노화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생기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화장품 분야에서 안티에이징 제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소비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유럽 국가에서 안티에이징 화장품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와 이목을 끈다. 유럽 청소년과 어린이 사이에서 ‘뷰티 붐’이 일면서 주름 개선 기능의 ‘안티에이징’ 화장품이 인기를 끌었는데, 일명 ‘세포라 키즈(Sephora Kids)’가 늘고 있는 추세다. 세포라 키즈는 고급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제품에 집착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스웨덴 전역에 유명 드럭스토어(약·건강식품·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매장) 매장 약 390여곳을 두고 있는 한 기업은 만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노화 방지용 화장품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5월 20일(현지시간) 스웨덴의 뷰티 체인 매장 고객의 20~40%는 13세 미만 어린이라고 보도하며 스웨덴의 드럭스토어 체인 기업이 만 15세 미만 어린이가 노화 방지 화장품 및 고급 스킨케어 제품을 구매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전했다. 기업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계속하도록 둘 수 없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책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유럽 전역에서 점점 더 많은 어린이가 더 ‘젊은’ 피부를 위해 고가의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제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들의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향한 과도한 열풍이 신체·정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몇몇 화장품은 아토피성 습진 질환을 악화하거나 재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티에이징 화장품이 유통 소비되는데, 관계자들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행 관세율표에서 안티에이징 화장품은 제3304호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에 분류된다.

단, 제3304호 해설서 제외 규정을 참조하면 ‘특정 피부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의약조제품(예 : 습진 치료용 크림)’은 제3003호·제3004호에, ‘발냄새 방지제’ 등은 제3307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085호_2024.6.3.

최신개정법령

훈령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고시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

공고

-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본 내용은 www.custr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훈령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865호, 2024.5.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기업의 수출·수주지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의 부단장과 지원관을 통합하여 부단장으로 일원화하고, 부단장은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함.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단장 1명, 지원관 1명”을 “부단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1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제2항 중 “지원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 및 지원관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단”을 “지원단”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23호, 2024.5.29.)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4-17호, 2024-04-0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4-23호(2024.5.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명	비고
152	2014-41호('14.04.30.) 2024-23호('24.05.29.)	WindowGlass forMobilePhone	
534	2023-40호('23.05.31) 2024-23호('24.05.29.)	COMBINATIONFILTER등3건	
568	2024-23호('24.05.29.)	Snackpellet forshrimpcracker등3건	
569	2024-23호('24.05.29.)	FrozenTilapia	
570	2024-23호('24.05.29.)	Frozensquid2건	
571	2024-23호('24.05.29.)	Frozenpiddockmeat	
572	2024-23호('24.05.29.)	Bodyscalewithbalance등2건	
573	2024-23호('24.05.29.)	식물성유지혼합물등4건	
574	2024-23호('24.05.29.)	SpongeDishScrubber	
575	2024-23호('24.05.29.)	Air filter	
576	2024-23호('24.05.29.)	Cabinair filter element 2건	
577	2024-23호('24.05.29.)	Windowglass for smartphone8건	
578	2024-23호('24.05.29.)	Windowglass for tabletPC32건	
579	2024-23호('24.05.29.)	Windowglass formonitor	

※ 이하 www.custracom.com 참조

공고

■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무역위원회공고 제2024-8, 2024.5.30.)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 가. 신청인 : 주식회사 포스코
- 나. 신청일자 : 2024년 4월 30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 품명 :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Cold Rolled Stainless Steel)
 - 조사범위 :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으로서 모든 강종, 형태, 폭·길이·두께의 제품을 포함하고, 표면처리 및 트리밍 여부를 불문함
 - 관세품목분류 : HSK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
 -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 조사대상공급자 : (베트남) 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Co., Ltd., TVL Joint Stock Company 및 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02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가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여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 나. 무역위원회에 조사 참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를 통해 무역위원회가 파악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질문서, 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 다. 조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경우 사실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 시 고려대상에서 제외됨
-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전화	044-203-5866	044-203-5877
FAX	044-203-4815	044-203-4813

*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 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무역구제> 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 참조

신규 발간도서 안내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2024년 신간)

FTA 및 WTO 등 관련 세율과 통합공고 및 기타 고시 등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단 한 권에!

10% ~~120,000원~~ **온라인 구매 108,000원**



2024년 1월 발간



2023년 10월 발간

관세형사법(2023년 개정판)

정확한 법집행과 적법절차 준수를 향한 지침서

관세/무역/외환형사분야의 복잡한 법리와 실무 정립,
중요 판례와 조사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

10% ~~60,000원~~ **온라인 구매 5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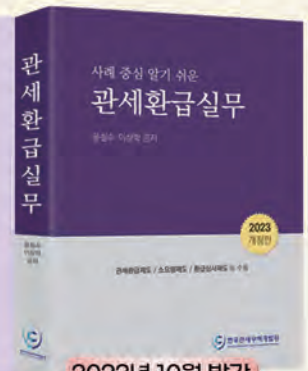
관세환급실무(2023년 개정판)

물품의 신속통관과 관세환급제도의 중요성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개정 서식 반영 및 사례와 그림으로 엮어 바로 실무에 활용

10% ~~50,000원~~ **온라인 구매 45,000원**



2023년 10월 발간

※ 상기 도서의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발간 예정 도서 사전 예약 할인!

**Special
price!**

구매 문의 02)3416-5112 **온라인 구매** smartstore.naver.com/kctdi

2024 (개정판) 관세법령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관세 행정 업무는 이 한권으로!



발간기념
10% 할인

60,000 원 ➡ 54,000 원

1

최신 기준 반영

관세/무역 관련 법령
2024년 4월 1일 기준
수록

2

변경 법령 반영

새로 제정된 덤핑/상계관세
세부운영규정 고시 반영
24년 관련법 개정이유
수록

3

쉽고 편한 법령 참조

관세법 등 최신 판례 및
고시명 업데이트
(판례 8개, 고시명 66개 등
총 74개 변경)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커스트라 :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